

【부 령】

- 국방부령제851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4
- 미래창조과학부령제3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7
- 고용노동부령제123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8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15-14호(귀화허가) 42
- 법무부고시제2015-15호(귀화허가) 46
- 법무부고시제2015-16호(국적상실) 49
- 법무부고시제2015-17호(국적상실) 51
- 법무부고시제2015-18호(국적상실) 54
- 국방부고시제2015-21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56
- 국방부고시제2015-22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62
- 국방부고시제2015-23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65
- 국방부고시제2015-24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증정정) 66
- 국방부고시제2015-2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66
- 국방부고시제2015-2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67
- 국방부고시제2015-2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67
- 국방부고시제2015-2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68
- 국방부고시제201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68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94
- 환경부고시제2015-5호(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9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호(신기술 지정) 102
-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호(선원 최저임금) 103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국적상실증정정) 104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국적상실) 108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국적상실) 108

(이면 계속)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1호(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1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1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하천점용 허가)	13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1호(시설항로표지 신설)	132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호(시설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변경>).....	1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하천수사용 허가)	1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하천수사용 허가)	13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실시계획인가)	13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하천수사용 허가)	134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35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3호(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13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호(<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137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호(신용분석사 민간자격 재공인).....	137
○국방부공고제2015-15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3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0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1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환경부공고제2015-17호(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40
○환경부공고제2015-18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0호(신기술지정 신청)	144
○경찰청공고제2015-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5
○문화재청공고제2015-9호(경주 남산 창립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146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5-1호(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4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5호(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14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호(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1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준공인가)	15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공시송달)	15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5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5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54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공시송달)	154

【국 회】

- 국회규칙제188호(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5
- 국회규칙제189호(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55

【법 원】

- 판결(대전지방법원) 157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호(재산등록 신고사항 공개) 161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8호(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163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9호(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64
- 경기도고시제2015-6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65
- 남양주시고시제2014-360호(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2공구> 공원사업시행계획) 166
- 광주광역시공고제2015-53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68
- 경기도공고제2015-70호(측정대행업 등록) 169
- 경기도공고제2015-77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169
- 전라남도공고제2015-51호(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169

【상 훈】

- 서훈(기획재정부·국회사무처) 170

【기 타】

-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171
-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171
-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73
- 결정(광주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173

부 령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징병신체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진단 중 “먼저 왼쪽 눈을”을 “먼저 오른쪽 눈을”로, “오른쪽 눈부터”를 “왼쪽 눈부터”로,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을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와”를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으로,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사선간접촬영”을 “방사선촬영”으로,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을 “흉부 촬영한 영상”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직접촬영”을 “재촬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진단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제20조제2항 중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2010년 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로 치료받은 경우			
가)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3	3	3
나)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4	4	4
다)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		5
라)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6	6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면역결핍질환			
가.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6	6	6
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5	5	5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블린혈증	5	5	5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경우)	5	5	5

별표 2의 내과란의 제11호가목2)나) 중 “정상인”을 “유지되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현증(갑상선호르몬제 투약을 중단한 후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3	3	3
다.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	4	4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4	4	4
--	---	---	---

별표 2의 내과란의 제28호가목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신염), 그 밖의 비특이적 사구체 신염	4	4	4
--	---	---	---

별표 2의 내과란의 제33호다목 중 “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은 제외한다”를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운동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발작이 확인되고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을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으로 한다.

다.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	4	4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가.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	4	3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2. 부정맥			
주 :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가. 심방기외수축	2	2	1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발작성 심방세동 및 조동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2	1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	3	2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4	4	4
나)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	5	5
다) 재발성 병력이 확인되고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4) 전극도자절제술로 치료하였으나 부정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전기생리학 검사로 확인된 경우)			
가) 동일한 부정맥(치료 전과 같이 유발부위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맥)이 재발한 경우(나목2) 또는 3)에 의거하여 판정한다)			
나) 다른 종류의 부정맥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지속성 심방성 빈맥(심방세동 혹은 조동, 심방 빈맥 등을 말한다)			
1)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3	3	2
2)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나 전기생리학 검사상 같은 부정맥이 재발하였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이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5	5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7. 선천성 심장질환

주1: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주2: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4 4

주: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 4 4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1)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4 4 4

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5 5 5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3.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4 4 4

나.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5

64. 염증성 장질환

가. 급성

1 1 1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4 4 4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5 5 5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

5 5 5

별표 2의 내과란의 제68호라목 주 중 “높은 급수”를 “낮은 급수”로 하고, 같은 목 표 1 및 표 2 외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3	3	3
2) [표 1]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4	4	4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4	4	4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별표 2의 내과란의 제73호나목 중 “결석”을 “결석 또는 담낭 폴립”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8호나목에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4	4	4
2) 재발하는 경우	5	5	5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5	5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3)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호흡 곤란의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거나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			
나. 재발성 병력이 확인되나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나필락시스	4	4	4
다. 아나필락시스가 한 차례 발생하였으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4	4	4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8호라목3) 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중진의 정신과란)의 제95호나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다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97호나목3)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98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

며, 같은 란 제99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란 제100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신경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란 제102호라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중전의 정신과란) 중 제103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정신지체자”를 각각 “지적장애자”로 한다.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주: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별표 2의 정신건강의학과란(중전의 정신과란)의 제105호 중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7호 중 “개선”을 “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09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일광예민성”을 “광과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	4	4
다.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 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5	5	5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1호나목 중 “경도나 고도”를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14호나목 중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경도(용의형)	3	3	3
나.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4	4	3
마.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 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	5	5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4호 중 “나병”을 “한센병(나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27호 중 “상피병”을 “코끼리 피부염(상피병)”으로 한다.

별표 2의 피부과란의 제130호나목 중 “50% 미만”을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5호나목 중 “절제술(협부절제술을 포함한다)”를 “절제술”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6호가목 중 “이하 또는 성형술”을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8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 한 하부대장 절제술	5	5	4
--	---	---	---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49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6	6	6
--------------------	---	---	---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외과란의 제165호마목2)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재발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부대동맥에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	5	5	5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6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8. 심부정맥질환 등			
가. 치유된 경우	3	3	3
나.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	4	4
다.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5	5	5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도(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 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	5	4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79호가목3) 중 “항생제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를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7호가목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8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4) 및 같은 호 마목 중 “견갑관절”을 각각 “어깨관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란의 제195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견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00호 중 “완관절”을 “손목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02호나목 중 “건갑관절”을 “어깨관절”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0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족지과다증”을 “발가락 과다증”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08호나목1) 가)·나) 외의 부분 중 “신전제한”을 “발등쪽 굴곡제한”으로 하고, 같은 목 2) 가)·나) 외의 부분 중 “굴곡제한”을 “발바닥쪽 굴곡제한”으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반슬”을 “안짱다리”로 한다.

별표 2의 정형외과관 중 제21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3	3	3
--------------------------------------	---	---	---

별표 2의 정형외과관의 제217호가목 및 나목 중 “2.5”를 각각 “2.0”으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관의 제239호 중 “수술여부와 무관하고”를 “모야모야병을 포함하고, 수술 여부와 무관하며”로 한다.

별표 2의 신경외과관 중 제242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 (motor grade III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5	5	5
---	---	---	---

별표 2의 신경외과관 중 제242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주를 삭제한다.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	5	5
---	---	---	---

별표 2의 흉부외과관 중 제255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쇄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쇄기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4	4
라. 양측 흉부에 폐쇄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술로 보지 않는다)	4	4	4

별표 2의 흉부외과관 중 제260호아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관의 제266호가목2)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악성종양”을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3	3	3
---------------------------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7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4	4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5	5	5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성형외과란의 제27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상면적 계산에 추가하고, 켈로이드를 포함하여 현증인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피부과에서 판정한다”를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도			
가)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	5	4
나)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6	6	5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나 범위가 5% 이상 10% 미만 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3)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안과란의 제280호라목 중 “제285호에서 판정한다”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8.00D 이상 ~ -12.00D 미만	3	3	3
4) -12.00D 이상	4	4	4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50D 이상 ~ +4.00D 미만	3	3	3
4) +4.00D 이상	4	4	4

별표 2 안과란의 제286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	3	3	3
3)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4	4	4

별표 2의 안과란의 제304호 각 목 외의 부분 주2 중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를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1호가목1)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I, II)”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I, II)”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기형”을 “기형(Marx 분류상 III)”으로 하고, 같은 3) 가)·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측성	5	5	4
나) 양측성	6	6	5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가목2) 중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는 경우이며 3개월 치료 후”를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고 CT상 명백한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측			
(1) 치료상태가 양호할 때	2	2	1
(2) 재발한 상태 또는 환기관 삽입된 상태	3	3	2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3호바목 1)·2) 외의 부분 중 “진주종”을 “진주종(화농성 중이염을 유발하지 않은 선천성 진주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25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온도안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조절하는 경우	3	3	3
2)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이 확인되고 안진검사, 전기와우도(ECoG), 전정유발근전위(VEMP) 등의 검사결과와 서로 부합되는 경우	4	4	4
3)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이독성 약물만 인정)을 시행한 경우	4	4	4
4)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을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5	5	5
5)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ECoG, VEMP의 검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	5	5	5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1. 부비동염

주1: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2: 수술은 반월관 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적절한 약물치료와 2회 이상 수술 후에도 치료 전보다 악화되거나 호전 없이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4	4	2
마.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5	5	4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구적

주1: 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병력이 6개월 경과 후, 외상성인 경우에는 3개월 경과 후 판정한다.

주2: 안면마비의 중증도(하우스브렉만 분류를 참고한다)와 범위를 종합하여 임상증상을 평가하고, 이에 부합되는 근전도(EMG)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1) 경도(grade II 안면마비)	2	2	1
2) 중등도(grade III 안면마비 또는 그 이상의 안면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	3
3) 고도(안면에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grade IV 이상의 중증 마비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4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구적

6	6	5
---	---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의 제348호나목 중 “수술한 경우”를 “수술을 하였거나 지속적 기도양압(CPAP) 치료를 시행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수술하였으나 수면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호흡곤란지수(RDI)>40]이 지속되는 경우(수술 6개월 후에 판정)	4	4	3
주.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관 중 제35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성 종양			
1)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2	2
2)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관의 제356호가목 1)·2) 외의 부분 중 “대사장애와”를 “전신적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잔석이 있는 경우 또는 대량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로 한다.

나. 전신적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4	4	3
--	---	---	---

별표 2의 비뇨기과관 중 제36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불수적”을 “불수의적”으로 한다.

다.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한다. 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외상, 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4	4
--	---	---	---

별표 2의 비뇨기과관 중 제3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3. 요도협착 주: 요도협착은 수술전 요속검사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3	3	3
나. 요도성형술 또는 2회의 요도확장술로 재발없이 치료된 경우	4	4	4
다.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5	5	5
라.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6	6	6

별표 2의 비뇨기과관의 제365호다목 1)·2) 외의 부분 중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를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의 주 중 “배설성요로조영술”을 “배설성요로조영술”로 한다.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4호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6.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3	3	3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3호가목 중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을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hypogonadism이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되는 저성선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성기발육부전은 저성선증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5호 각 목 외의 부분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의 제385호가목1) 중 “1/2”을 각각 “1/3”로,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중전의 2)) 중 “동위원소 검사”를 “핵의학 검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2) 중 “동위원소 검사”를 각각 “핵의학 검사”로 한다.

2)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 1/2인 경우	4	4	4
-----------------------------	---	---	---

별표 2의 치과란의 제39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악관절장애”를 “턱관절장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나) 외의 부분 중 “최초 1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를 “경우”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04호다목 중 “낭종(1회에 한한다)”을 “낭종”으로 한다.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0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08. 부정교합 주: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	--	--	--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바목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치과란의 제411호나목2) 중 “경우(1회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원시·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연구개발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I. 연구개발실적 및 III. 종합의견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연구개발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연구개발결과”를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연구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고유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공개가능 여부	[]가, []부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장 관 귀 하

작성방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자료]

연구개발계획서

(5쪽 중 제1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생명자원		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발생여부									
예상수량									

7.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쪽 중 제2쪽)

8.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9.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10개 이내)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부처명	과제명	지원 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11.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단위 : 백만원)

가. 총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5쪽 중 제4쪽)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 수	참여율 (%)	총액	다른 과제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합계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13.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관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15.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	

작성 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로 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연구성과 : 발생여부란에 발생이 예상되면 ○으로 표시 및 예상수량을 기재하며,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면 X로 표시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합니다.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합니다.(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 · 계획서

고유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공개가능여부	가[], 부[]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장 관 귀 하

작성 방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의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붙임자료]

(8쪽 중 제1쪽)

연차실적 · 계획서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 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번호 *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번호 *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번호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쪽 중 제2쪽)

3)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4)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소프트웨어

연도	소프트웨어 명	소프트웨어 구분*	등록번호**

* 1.응용소프트웨어 2.시스템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6) 생명자원

가) 생물자원

연도	생물자원명	기탁일	기탁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생명정보

연도	생명정보명	등록일	등록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쪽 중 제3쪽)

7) 화합물

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기탁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9)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 수	사업화형태			

10)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1)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12)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

연구시설·장비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연구시설·장비 활용용도	설치장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 (* 등록번호를 말함)

사. 연구비 집행실적

항목	비목	금액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 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8쪽 중 제6쪽)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 연구원 편성표 (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연도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현물		%			%		
	학생인건비	현금		%			%		
	소계			%			%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			

2)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사람-월)	총급여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8쪽 중 제8쪽)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3)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 방법

- 가. 제1호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 나. 제1호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 다. 제1호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 라. 제1호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 마. 제1호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바. 제2호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 사. 제2호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 아. 제2호라목의 연구평가 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요약서

I.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 가. 표지 200g/m² 양면 아트지
 - 나. 내용 80g/m² 모조지
4. 인쇄방법
 -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II.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III.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IV.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주 의 (편집순서 8) </div>	과제번호 ↓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연구 ↓ 미래창조과학부 ↑ 3cm	<p style="text-align: center;">보안과제[], 일반과제[] 과제번호 5cm</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신약 개발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p> <p style="text-align: center;">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15 포인트 명조계열)</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p> <p style="text-align: center;">↑ 9cm ↓</p>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창조과학부 (17포인트 명조계열)</p> <p style="text-align: center;">↑ 4cm ↓</p>
↑ 6cm ↓	↑ 3cm ↓	(뒷면)

(앞면)

2. 제출문

제 출 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단 계 구 분	(해당단계)/ (총 단 계)
연구 사업 명	중 사업 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 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 과제 명	대 과 제 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 과제명				
연구 책임자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 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 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4. 요약문

요약문

I. 제목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IV. 연구개발성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생명자원		화합물
							생명정보	생명자원	
계획									
실적									
등록·기탁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V.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합니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성과(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 논문게재 성과(게재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기탁 번호)

- 특허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 출원: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기탁번호 / 등록: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기탁번호
- 기술요약정보(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아이디어창안·특허만신청·기술개발진행중·기술개발완료·실용화단계·시장개척단계·기타), 등록·기탁 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최종), 발간일, 등록·기탁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기탁번호)
 - 생명정보(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기재)
 - * 생물자원: 연도, 생물자원명, 기탁일, 등록·기탁 번호 / 생명정보: 연도, 생명정보명, 등록일, 등록·기탁 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기탁번호)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의 응용 및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합니다.)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연구시설·장비 현황(도입·개발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 비고유번호를 기술합니다)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합니다)

8. 본문

본 문 작 성 방 법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6.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7.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명확하게 하고,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는 일부 권리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차실적·계획서 등에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직무분야(26)의 기술·기능 분야(49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능 분야(495)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7	109	114	161

별표 2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란(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1)							스포츠경영관리사

별표 7의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미용(일반, 피부, 네일)”을 “미용(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으로 한다.

별표 8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이용·숙박 ·여행·오 락·스포츠 (2/8)	121 이용·미용(7)	이용장	필기시험	이용기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 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이용 작업
		이용사	필기시험	이용이론,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실기시험	이용실무
		미용장	필기시험	미용기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 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미용 작업
		미용사(일반)	필기시험	미용이론,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실기시험	미용실무
		미용사(피부)	필기시험	피부미용이론,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 학,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실기시험	피부미용실무
		미용사(네일)	필기시험	네일개론, 공중위생관리학, 네일미용 기술
			실기시험	네일미용실무
		미용사(메이크업)	필기시험	메이크업개론, 공중위생관리학, 화장 품학
			실기시험	메이크업미용실무
	122 숙박·여행·오 락·스포츠 (1)	스포츠경영관리사	필기시험	1. 스포츠산업론 2. 스포츠경영론 3. 스포츠마케팅론 4. 스포츠시설론
			실기시험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 실무

별표 11의4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1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 중 23 인쇄·목재·가구·공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31 인쇄·사진	사진, 인쇄
----------------	-----------	--------

별지 제11호서식의 1쪽 제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1쪽 제3호 중 “5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미용사(일반)	미용사(일반)
	미용사(네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미용사(일반)	미용사(일반)
	미용사(메이크업)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1의5]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
(제15조의2 관련)

주무부장관	등록번호	공인기간	공인민간자격종목	면제범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08-0653	2011. 9. 30. ~ 2016. 9. 29.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면제

비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과목 면제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어야 하며, 공인기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4]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

군	학 교	교 육 과 정	면 제 종 목	비 고
육 군	공병학교	불도저특기	불도저운전기능사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더특기	로더운전기능사	
		굴삭기특기	굴삭기운전기능사	
		공병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공병장비운용·정비초급				

종합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중급	차량야전정비중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차량운용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물자취급장비운전병	지게차운전기능사		
		발칸수리	전자기기기능사		
		용접/기계공작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량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차량야전정비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건설장비야전정비초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정보통신학교	정보체계운용초급/ 정보체계운용중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항공학교	항공정비초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해 군	기술병과학교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능사		
		보수 초급·중급	용접기능사		
	해안구조대	잠수	잠수기능사		
	행정학교	한식조리	한식조리기능사		
	6전단 609	항공기체/기관 초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관 중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초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중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공 군	정보통신 학 교	유선통신체계정비 부사관 초급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장거리통신정비 부사관 초급	무선설비기능사		
		정보체계관리부사관초급	정보처리기능사		
		지상레이더체계정비부사관 초급	무선설비기능사		
		무선통신체계정비부사관 초급	무선설비기능사		
	군수 1학교	전력운영병	전기기능사		
		항공기기체정비 부사관 초급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제작 부사관 초급	용접기능사		
		정밀측정장비정비 초급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군수 2학교	항공설비병	에너지관리기능사		
		토목 부사관 초급	굴삭기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기지건설장비운전병	굴삭기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항공시설부사관초급	굴삭기운전기능사		

비고: 각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교육훈련 이어야 하고,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복무는 각 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확인하며, 해군기술병과학교는 보수 초급·중급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만 용접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메이크업분야 미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사 종목을 신설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학요건을 갖추고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디코공피다크	1970.02.04	여	타 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6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릴리엘라캉	1976.03.2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훤왕궁로 161	국적법 제6조2항3호		
전순애	1957.05.16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학일길 10-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피치쿠테아	1980.09.08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10길25 (신동, 에덴연립)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멘	1984.10.2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수앙	1985.05.19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3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윌티리에우	1989.12.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길 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농	1987.03.0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인화	1977.0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진조	1978.03.02	여	중 국	경기도평택시원적봉로26번길41 (서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향자	1963.01.28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4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금	1967.09.08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1816-12	국적법 제6조2항3호		
문나팔리아	1981.03.04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5	국적법 제6조2항1호		
쩨티완	1989.05.1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길 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담티담	1989.01.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이읍1길 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우양양홍킨	1951.08.1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130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넨	1990.02.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2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자	1950.01.17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빨리나	1944.03.01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리마	1952.06.15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봉화로17-10 (사우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영자	1947.04.09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국적법 제6조2항2호		
지아링링	1981.04.06	여	중 국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1로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나	1983.01.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205번길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트사이 항다와남	1983.02.07	여	몽 골	광주광역시남구서당골길27-1 (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튀항	1966.04.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천군 묘산면 관기리 6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 란프엉	1986.03.2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거제시거제중앙로17길10 (고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쩨티느이	1992.01.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잣피길 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나리	1989.01.10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9길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쩨민뎌	1982.08.3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북구시랑로170번길5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녹디에우	1992.02.21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559-1 (다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하이	1985.08.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카기로바쿨 쇼드샤야흐 메토브나	1981.10.29	여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255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혜	1975.06.27	여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우산간동길 23-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금화	1964.04.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22	국적법 제6조2항3호		
왕쏘오핑	1970.09.30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선화	1971.12.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7라길10	국적법 제6조2항3호		
성홍매	1972.02.06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46번길21 (수진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혁화	1966.05.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일순	1959.0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9길20-4 (종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9.08.28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고재동길 134-6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월향	1967.04.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병남	1938.08.06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간동길 23-9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현택	1936.06.28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누실길 40-12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보위	1933.06.04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318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조	1943.08.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다길8-4 (사당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성춘	1936.0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상리2길8-1 (용강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점순	1950.09.23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2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덕순	1945.11.0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리 39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정희	1941.02.18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산포2길 72	국적법 제6조2항2호		
문복순	1947.10.1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칠성길 62	국적법 제6조2항2호		
뜨루옹 티타오	1978.11.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길7 (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감짱	1989.01.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낙동길 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미레	1986.01.2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5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매화	1977.10.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림	1978.05.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오무난	1985.03.2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25길 2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시양화	1972.03.03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조하	1987.09.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양로7길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문려	1972.07.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8길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2.01.24	남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외곡중기길 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가이	1971.05.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4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완티 휘엔짱	1990.08.2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7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짱다이	1980.11.2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봉록뫼	1987.08.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계1길1-2 (고흥읍)	국적법 제6조2항4호		
허옥분	1961.03.0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울로 2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윌티관	1990.07.25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68	국적법 제6조2항1호		
벵다넷	1989.08.1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브다	1985.05.1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7	국적법 제6조2항2호		
당티레튀	1989.11.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464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주옥	1962.10.30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04	국적법 제6조2항1호		
곽성순	1968.06.13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창말길 6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뚜엣방	1985.08.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감항	1988.09.22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 4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위홍	1984.08.10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3길67 (도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죽린	1989.02.2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티응아	1990.08.2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57길17 (신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창휘	1986.01.10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이엔	1978.08.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7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팔리리나	1986.06.09	여	네 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석로80번길 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마이리	1988.09.0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눈어치1로5 (금강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말아스믹 삼벨로브나	1978.11.08	여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5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느꼭타 오트란	1990.02.1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투이	1989.08.22	여	베 트 남	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길84 (상운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쌩꾼니빠다	1985.06.28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혜음로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란	1968.04.17	여	중 국	울산광역시남구신정로33번길9 (달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부티뚜엔	1991.08.2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대곡용명길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땀티화	1987.06.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195-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티담	1979.08.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튀	1989.09.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로398 (효성 시티빌)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춘잉	1988.09.12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효동길 49	국적법 제6조2항1호		

● **법무부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림춘희	1964.01.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브영	1990.10.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티주엔	1989.01.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98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성월	1979.03.16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1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진	1985.10.19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덕영대로417번길 22	국적법 제5조		
조해순	1986.08.13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영티프영	1985.09.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매화	1966.04.19	여	중 국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348번길 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신애	1960.06.14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광실	1962.07.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351번길8-3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따찌야나	1981.07.06	여	우즈베키 스탄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피로100	국적법 제5조		
최동식	1973.02.21	남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까치말로6번길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뤼엔	1970.10.16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7길 23-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츄스	1994.07.02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7길 23-38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찬티기에우친	1983.06.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금녀	1975.05.06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자	1985.06.14	여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외동반림로80번길3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홍화	1978.03.0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교리1길 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성옥	1962.11.09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일	1957.06.30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16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경순	1963.04.10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28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길	1966.01.02	남	중 국	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112(삼죽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홍룡	1976.05.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매봉14길9-1 (옥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용옥	1982.11.03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도	1968.05.05	남	중 국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신봉음촌길5 (산양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정옥	1961.02.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6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복란	1967.10.02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심향순	1968.03.02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524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명수	1962.01.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은희	1966.09.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0길57 (논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옥	1944.05.12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143-1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보징	1928.05.10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덕산용산길 41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성자	1944.12.08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798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숙자	1942.09.30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구마동길 502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숙란	1940.04.0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구산1길 50-3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승희	1947.08.12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구미2길 182-1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순	1939.07.10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606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복임	1937.11.12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순덕	1948.07.1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국사봉로 917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성순	1951.11.0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60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복순	1949.04.0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변상순	1934.06.0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69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정희	1951.11.1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절강길 27-13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정혜	1983.07.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4길 11-13	국적법 제5조		
김향	1985.07.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54길11-9	국적법 제5조		
조연화	1969.0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5길6-11	국적법 제5조		
짱수쥌	1954.05.0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29	국적법 제5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아브라함의르 다우알레무	1970.09.10	남	에티오피아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49길14-3 (한남동)	국적법 제5조		
류징	1983.0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46-32	국적법 제5조		
창휘잉	1987.09.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36길38-8 (구의동)	국적법 제5조		
싸토로바 딜도라	1976.11.16	여	우즈베키 스탄	경북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7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춘자	1962.07.15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남로40 (도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팔링소쿰	1986.02.08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동락길205 (용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선	1971.01.26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찬턴	1981.06.2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1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숙자	1934.02.02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용	1968.02.09	남	중 국	충청남도공주시호계황골길209 (사곡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미화	1982.05.25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국	1982.08.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바랑산1길 13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드아	1987.08.0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13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경화	1963.03.02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9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길자	1954.10.16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1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홍옌	1977.11.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갈마역로11번길29 (갈마동)	국적법 제5조		
짱치	1986.02.15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월릉면 위전리 6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국	1990.01.16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신로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허이	1983.01.16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흥도로178번길 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분옥	1956.12.19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회룡로105번길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춘란	1962.04.19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34	국적법 제6조2항1호		
터이머돌고르	1956.09.29	여	몽 골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 735-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버티튀남	1985.01.06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선	1973.05.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만리재로24길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춘매	1985.04.13	여	중 국	경기도구리시검배로72번길11-12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모광운	1946.09.21	남	타 이 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하이파크2로59번길7	국적법 제5조		
유숙미	1948.03.03	여	타 이 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하이파크2로59번길7	국적법 제5조		
이정철	1950.02.26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554-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띠에우린	1980.06.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5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호영	1991.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5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숙경	1962.01.15	여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28	2000.12.20	외국국적취득
김해인	1993.03.06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413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안진현	1978.05.04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588	2014.02.14	외국국적취득
황정화	1954.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1가 16-16	1984.09.12	외국국적취득
박두리	1948.06.1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32	1987.07.24	외국국적취득
최윤석	1986.02.14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417	2014.05.13	외국국적취득
백지웅	1994.06.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2-14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강해민	1987.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90-21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조수희	1984.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1	2011.03.0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0.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27-3	2013.05.16	외국국적취득
김백조	1967.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27-3	2013.02.25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5.05.01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307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이병은	1965.10.29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307	2006.06.27	외국국적취득
조은식	1993.09.16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125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88.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14.06.19	외국국적취득
신영서	1981.03.08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24	2012.02.24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46.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6	2005.06.30	외국국적취득
이호목	1961.11.07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54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94.05.02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54	2011.10.12	외국국적취득
봉정아	1966.10.12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54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최창호	1954.04.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7	2000.07.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소영	1988.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90	2010.01.18	국적선택불이행
박한솔	1993.07.0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4-4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이희성	1959.10.2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2000.02.01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55.05.19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7.02.18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145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조석환	1984.03.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95-1	1999.02.22	외국국적취득
박인회	1985.02.28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145	2000.08.21	외국국적취득
배숙자	1934.02.2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6	2005.11.18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88.12.14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333	2001.04.23	외국국적취득
정구현	1995.04.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	2003.11.24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90.02.02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333	2001.04.23	외국국적취득
한희선	1962.05.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11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정정민	1985.04.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27-2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노선형	1961.04.1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1999.04.16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4.11.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3-67	1999.04.14	외국국적취득
오승엽	1982.02.2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57-5	2006.12.07	외국국적취득
황보주영	1995.09.28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01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정수현	1967.04.2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01	2014.04.17	외국국적취득
황보전	1967.09.09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01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어은	1939.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90-1	1993.09.13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95.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9-4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66.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9-4	2011.06.23	외국국적취득
박세하	1993.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9-4	2011.06.23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4.05.19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산리 500	2011.11.16	외국국적취득
박양옥	1946.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74	1984.12.07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67.05.14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17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66.08.3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17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나석호	1986.01.06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236	2008.06.11	외국국적취득
김강희	1990.02.05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7	2012.12.03	외국국적취득
김강미	1987.10.26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7	2012.10.15	외국국적취득
김형철	1992.08.1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7	2012.12.03	외국국적취득
백경옥	1972.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7-26	2012.08.31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97.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7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이효재	1995.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7	2012.07.24	외국국적취득
권경희	1966.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7	2012.09.26	외국국적취득
이강호	1964.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7	2012.07.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주현	1979.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2-18	2001.08.09	국적선택불이행
김진주	1966.1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1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기훈	1995.10.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1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경준	1991.05.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1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배정호	1961.04.2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276	2014.05.23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64.04.0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276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조성학	1964.03.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115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조건희	1996.02.2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115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전진희	1973.06.18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6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최혜정	1973.12.17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6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0.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4-22	2002.02.21	외국국적취득
백명희	1960.08.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4-22	2002.02.21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88.10.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4-22	2002.02.21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1991.01.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4-22	2002.02.21	외국국적취득
김시문	1990.02.15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367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최병진	1991.01.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0-2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장은주	1976.02.2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71.01.3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7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정동주	2002.12.1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2013.07.17	외국국적취득
박찬은	1970.06.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59-20	2006.04.19	외국국적취득
김남현	1993.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5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준한	1983.05.14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120-19	2012.04.04	외국국적취득
김현송	1992.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05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홍철	1967.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9-11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최광수	1989.08.03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277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9.12.13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1	2012.11.06	외국국적취득
김또순	1962.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엄수현	1983.08.0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2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강상만	1955.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2967	1994.12.21	외국국적취득
김정필	1964.02.1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29	1994.05.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경택	1990.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2012.02.14	외국국적취득
이정완	1997.06.18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64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곽대훈	1999.09.02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1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유창연	1991.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64-41	2014.05.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명희	1957.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62-2	1999.04.06	외국국적취득
명찬우	1988.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24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7.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70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이학천	1961.08.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74	1996.06.18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68.03.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74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강경임	1968.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76-73	2012.04.23	외국국적취득
우성엽	1992.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2-4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안명희	1971.09.03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129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이장희	1964.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58-34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심일환	1928.08.25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99-2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심행혜	1958.02.07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99-2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5.12.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27	1989.11.15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78.12.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27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48.12.17	남	독 일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18	2003.05.13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2.02.06	여	독 일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18	2003.05.13	외국국적취득
김대수	1982.09.24	남	독 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38	2014.03.25	외국국적취득
김인규	1992.08.17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53-529	2004.07.14	외국국적취득
서일권	1993.07.0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72-1	2012.11.0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6.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47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78.06.15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13-4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최동열	1972.08.20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울금리 612	2008.02.13	외국국적취득
우병선	1953.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5	1996.03.27	외국국적취득
진경숙	1959.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5	1996.03.27	외국국적취득
홍인표	1950.05.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77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이재인	1989.08.3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0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추금자	1962.06.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0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선형	1958.07.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0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양서연	1987.1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10	2013.09.17	외국국적취득
박인덕	1972.12.01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38	2014.06.06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54.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285	1984.03.16	외국국적취득
서민교	1998.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268	2012.10.24	외국국적취득
홍미영	1968.04.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4-23 A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서영교	1999.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268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매	1968.08.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전홍식	1965.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6	2010.03.22	외국국적취득
최봉림	1960.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64-1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노재혁	1968.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4-23 A	2011.11.16	외국국적취득
황금복	1935.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7-19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윤수한	1997.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2-2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심재운	1994.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0-15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이태홍	1985.09.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87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서은구슬	1987.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40-1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우소영	1988.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20-25	2010.03.03	국적선택 불이행
권형진	1990.10.12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81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조본환	1968.04.23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28	2005.04.2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주	1969.09.03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28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유현중	1968.01.14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22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70.07.27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22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유동준	1997.04.26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22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유은서	1999.02.04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225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채인순	1939.10.21	여	미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오유상	1992.12.2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5	2012.05.28	외국국적취득
권동익	1964.01.1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6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성시영	1995.05.16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 196	2012.08.22	외국국적취득
권혜경	1960.12.24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93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조윤주	1969.09.23	여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33-7	2012.04.05	외국국적취득
조은진	1984.01.04	여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5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원세연	1987.09.23	남	독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76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1.02.15	여	독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2	2014.06.04	외국국적취득
이순용	1949.01.16	여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33	1986.02.19	외국국적취득
하금술	1960.01.17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191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69.03.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364	2010.04.30	외국국적취득
김이현	1992.08.04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59	2013.12.20	외국국적취득
김승권	1993.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34	2014.07.10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1991.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34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이월옥	1959.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산 18-3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77.08.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82	2014.01.28	외국국적취득
백경덕	1994.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37	2013.06.06	외국국적취득
김민옥	1990.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김진옥	1989.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5-297	2014.07.18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3.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권덕용	1973.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96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유대한	1993.06.03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19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유민국	1993.06.03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19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양봉안	1951.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산 50-8	2005.01.04	외국국적취득
허경아	1970.04.17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700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유경동	1970.01.17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700	2012.03.16	외국국적취득
강성준	1952.11.12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 457	1987.04.28	외국국적취득
박공임	1957.10.15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 457	1987.04.28	외국국적취득
박보옥	1925.08.05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 457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손재권	1944.01.01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41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59.03.27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2	2009.03.05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63.10.04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2	2006.11.02	외국국적취득
남혜영	1965.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15-1	2000.12.06	외국국적취득
고효성	1960.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6	1987.03.18	외국국적취득
송성인	1993.07.29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7	2013.10.04	외국국적취득
송예슬	1995.01.21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7	2013.10.04	외국국적취득
곽윤태	1952.07.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33	1985.05.23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92.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46-3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최준우	1990.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42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7.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72	2003.05.29	외국국적취득
황세원	1990.09.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37	2014.04.21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65.07.13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계리 500	1987.07.30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1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황보영환	1996.12.25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01	2014.05.30	외국국적취득
김소명	1991.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73-30	2008.07.15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1994.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73-30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94.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73-30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6.12.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	2013.02.05	외국국적취득
황선경	1960.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37	2014.03.12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62.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37	2014.03.12	외국국적취득
배진원	1953.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356	2000.03.01	외국국적취득
홍상호	1982.01.03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6-16	2005.02.10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49.09.26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	2014.04.2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2.05.05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554	2010.05.04	외국국적취득
김승규	1993.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28-33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해석	1961.11.14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403	1977.02.19	외국국적취득
최진기	1988.04.0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47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정인애	1992.02.0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068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정민수	1996.02.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068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최정임	1973.08.2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92-13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채영빈	2001.01.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92-13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구옥희	1960.09.1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1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임정연	1995.01.0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1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임민철	1968.01.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60	2007.09.24	외국국적취득
허유경	1969.12.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60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임진훈	1997.07.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60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임진우	2002.02.1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60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주경규	1954.08.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1995.11.08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58.03.0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1995.11.08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7.01.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1-5	2005.10.27	외국국적취득
나수현	2000.05.0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1-5	2005.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필	1946.06.2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68	2001.07.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경숙	1946.04.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68	1988.10.18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75.01.15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68	1988.10.18	외국국적취득
김무성	1977.09.12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68	1988.10.18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1980.04.23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68	1988.10.18	외국국적취득
백은혜	1981.09.2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224	2013.11.30	외국국적취득
배용준	1979.04.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20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오숙선	1952.07.1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94-7	2003.02.27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88.06.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49-31	2012.10.10	외국국적취득
허다신	1995.07.28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25	2005.03.02	외국국적취득
신호식	1956.1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1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95.05.2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250	2013.07.04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42.12.0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58	2008.11.17	외국국적취득
백승미	1966.07.22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26	2014.07.08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82.03.2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9-24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95.11.26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강혜민	1985.02.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16	2002.01.26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80.04.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8	2005.03.2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8.05.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8	2005.05.30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1994.12.28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리 12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백진경	1998.04.08	남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316	2005.11.24	외국국적취득
김보원	1962.11.25	여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316	2005.11.24	외국국적취득
백진수	1997.01.22	남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316	2005.11.24	외국국적취득
김범석	1989.06.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16	2014.03.31	외국국적취득
조은실	1987.02.16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6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안성호	1992.07.0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11-10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천병주	1987.12.0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9	2009.03.24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55.07.29	여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159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1989.04.11	여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254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조유라	1992.08.2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7	2009.04.30	외국국적취득
변동규	1993.10.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	2012.07.26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72.05.2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0	2005.02.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진옥	1968.1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7-2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김경세	1993.06.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7-2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5.0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7-2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김경신	2000.04.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7-2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63.08.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7-25	2012.07.16	외국국적취득
유정보	1987.02.03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02	2005.12.03	외국국적취득
한영미	1958.06.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128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이미순	1969.01.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554	2004.09.24	외국국적취득
강영호	1964.04.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554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94.02.0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75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이건오	1995.02.1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75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02.2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75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안지원	1980.08.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8-11	1991.07.31	외국국적취득
노태형	1999.08.2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63-11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윤승미	1960.01.2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67	1995.07.07	외국국적취득
김철영	1952.12.2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67	1995.07.07	외국국적취득
김진	1990.10.3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7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3.01.1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63-11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88.05.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4-1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7.11.22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118	2005.08.11	외국국적취득
이조은	1992.02.20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118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강성윤	1982.05.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89-8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51.0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1998.01.29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84.08.0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3	2009.06.09	외국국적취득
안병남	1955.02.06	여	독 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1152	2006.09.05	외국국적취득
박길자	1941.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9	1994.04.22	외국국적취득
장송	1931.08.17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58	1982.09.03	외국국적취득
송삼랑	1943.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61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차선병	1960.05.2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85	1981.03.16	외국국적취득
박경환	1960.01.15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97	1998.01.28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67.01.22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14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96.09.1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28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강석영	1991.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66-168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98 등 20필지
 - 면 적 : (기정) 7,533.7㎡ → (정정) 20,335㎡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4. 5. 13. ~ 2014. 12. 31. → (변경) 2014. 5. 13.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20,335	7,533.7						
	정정			20,335	20,335						
1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98	전	1,806	471.1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98	전	1,806	1,806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2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98-2	전	3,584	935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98-2	전	3,584	3,584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3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0	대	2,083	543.4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0	대	2,083	2,083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4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1	전	1,305	340.4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1	전	1,305	1,305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5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2	대	115	30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2	대	115	115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5-1	잡	1,260	328.7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5-1	잡	1,260	1,260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7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9	전	2,053	410.6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534	이의웅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534	이의웅 (1/5)	-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09	전	2,053	2,053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국방부 (4/5)	-	-
										-	-
8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	전	1,633	1,166.4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	전	1,633	1,633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9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4	전	42	30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4	전	42	42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10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5	전	1,005	717.9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1-5	전	1,005	1,005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11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3	대	229	163.6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3	대	229	229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4	대	783	559.3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4	대	783	783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13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7	전	803	573.6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37	전	803	803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62	김덕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64	김성규 (1/7)	-	-
									서울 성동구 신당동 167	김원규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08	김학욱 (1/7)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3	김한규 (1/7)	-	-
	국방부 (2/7)	-	-									
14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1	전	1,753	457.3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1	전	1,753	1,753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집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5	전	37	9.7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5	전	37	37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16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6	전	155	40.4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1-6	전	155	155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17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2-1	대	291	291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3	권태정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3	권태정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2-1	대	291	291	잡	생산관리지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3	권태정	-	-
											-	-
18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2-2	전	1,031	269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2-2	전	1,031	1,031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19	기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3	전	231	60.3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	-
									성남시 태평동 107-40	조두환	-	-
	정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43	전	231	231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연천군 신서면 도신4리	김금련 (2/23)	-	-
										국방부 (21/23)	-	-
20	기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38-2	답	136	136	답	계획관리지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8-5	임직재	-	-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219	임원상	-	-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173	임광순	-	-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943	임동재	-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391	임주호	-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06	임면호	-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578	임충재	-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임백택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정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38-2	답	136	136	답	계획관리지역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609	임은재	-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12	임백철	-	-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8-5	임직재	-	-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219	임원상	-	-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173	임광순	-	-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943	임동재	-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391	임주호	-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06	임면호	-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578	임충재	-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임백택	-	-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609	임은재	-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12	임백철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15 등 10필지
- 면 적 : (기정) 6,465.29m² → (정정) 15,529m²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4. 5. 14. ~ 2014. 12. 31. → (변경) 2014. 5. 14.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15,529	6,465.29							
	정정			15,529	15,529							
1	기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15	답	182	182	잡	자연녹지 지역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임진리 60	김윤태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15	답	182	182	잡	자연녹지 지역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임진리 60	김윤태	-	-
2	기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1	전	138	138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36	서재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35	대구서씨 도위 공파종중
	정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1	전	138	138	잡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36	서재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35	대구서씨 도위 공파종중
3	기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2-1	전	2,894	2,894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천시 서구 신현동 289-18	김제현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2-1	전	2,894	2,894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천시 서구 신현동 289-18	김제현	-	-
4	기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7	대지	1,289	1,289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2-17(신현동)	김제현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7	대지	1,289	1,289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2-17(신현동)	김제현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	기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2	잡	6,420	284.41	잡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165	박동성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2	잡	6,420	6,420	잡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165	박동성 (96/2167)	-	-
6	기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2-1	잡	318	14.09	잡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165	박동성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2-1	잡	318	318	잡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165	박동성 (96/2167)	-	-
7	기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22-1 4	전	501	103.19	잡	자연녹지 지역	파주군 파주읍 파주리 413-6	이갑재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22-1 4	전	501	501	잡	자연녹지 지역	파주군 파주읍 파주리 413-6	이갑재 (331/1607)	-	-
8	기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7-2	전	2,815	1,440.41	잡	생산관리 지역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637	봉국사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7-2	전	2,815	2,815	잡	생산관리 지역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637	봉국사 (744/1454)	-	-
9	기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71-1	잡	922	70.19	잡	보전관리 지역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637	봉국사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71-1	잡	922	922	잡	보전관리 지역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637	봉국사 (22/289)	-	-
10	기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77-1 2	임야	50	50	임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6번길 20, 910동 204호 (이매동, 이매촌)	우상록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77-1 2	임야	50	50	임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6번길 20, 910동 204호 (이매동, 이매촌)	우상록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진입도로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16-1 등 2필지
 - 면 적 : (기정) 886.5㎡ → (정정) 1,177㎡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4. 7. 25. ~ 2015. 4. 30. → (변경) 2014. 7. 25.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1,177	886.5							
	정정			1,177	1,177							
1	기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16-1	잡	596	596	전술도로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응담리 116	한중협	-	-
	정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16-1	잡	596	596	전술도로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응담리 116	한중협	-	-
2	기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산16-7	임야	581	290.5	전술도로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30-2 안산울곡아파트 201-1102	구명숙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5-3	파주시 산림조합
	정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산16-7	임야	581	581	전술도로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30-2 안산울곡아파트 201-1102	구명숙 (1/2) 국방부 (1/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5-3	파주시 산림조합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중정정

국방부고시제2014-273호(관보 제18354호, 2014.9.25.)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의 토지등의 세목(細)에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산31-12
 - 면 적 : (기정) 66㎡ → (정정) 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기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산31-12	임야	99	66	잡종지	자연녹지 지역	경산시 고산면 이천동 98	김정민	-	-
								대구시 동구 범어동 601	김정수	-	-
	정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산31-12	임야	99	99	잡종지	자연녹지 지역	경산시 고산면 이천동 98 (3/9)	김정민 (3/9)	-	-
								대구시 동구 범어동 601 (3/9)	김정수 (3/9)	-	-
							국방부 (3/9)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일부시설 대체사업
2. 사업의 개요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일부시설 이전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m ²)	연면적(m ²)
1탄약고	경북 영천시 범어동 산30, 8-3번지	4,988	420
2탄약고	경북 영천시 범어동 산30, 11번지	2,635	210

4. 사업의 시행기간 : '15. 1. 16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사업담당에 문의 [☎ 054-811-303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주유기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969	31,803	600

4. 사업시행기간 : '15. 1. 16.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2-152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카트대기소 신축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2,056	1,925

4. 사업시행기간 : '15. 1. 16.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18비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649-316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도서지역 구조물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3-2 앞 공유수면

나. 면 적 : 2,869.4m²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16.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561·564 ASP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564 ASP(송우리)를 561 ASP(무봉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일원(158 필지)

나. 면적 변경 : 262,562㎡ ⇨ 282,640㎡ (증 20,07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4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포천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다. 연락처 : 031 - 538 - 306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담당자(☎ 031-538-306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82,640							
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1	임	6,149	3,340	임야, 부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8길 7-6(수유동)	김창환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1	임	6,149	2,444	임야, 부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8길 7-6(수유동)	김창환			
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2	임	2,083	2,083	임야	농림지역	산림청	국			
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810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파트 108-1106	홍윤기 (지분의 1/3)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12 홍릉동부아파트 101동 2103호	홍정기 (지분의 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8-20	홍선기 (지분의 1/3)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718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파트 108-1106	홍윤기 (지분의 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12 홍릉동부아파트 101동 2103호	홍정기 (지분의 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1-4	임	1,012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8-20	홍선기 (지분의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4	임	1,329	1,329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58-17	홍성희			
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5-4	창	550	265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19-346	공영인			편입적 면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5-4	창	550	276	창고 부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19-346	공영인			
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5	전	3,866	2,720	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70(장위동)	공영인			편입 면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5	전	3,866	2,733	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70(장위동)	공영인			
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15-9	구	2,863	1,155	수로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편입 면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15-9	구	2,863	1,335	수로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토교통부 232	국			
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6	답	1,921	256	답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1길 60-9	김화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80-2	소흘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자,지 상권자)	편입 면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6	답	1,921	389	답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1길 60-9	김화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80-2	소흘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자,지 상권자)	
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5	임	1,777	1,777	전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1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6	도	107	107	수로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10	도	10	10	임야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1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5	임	63	63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5	임	4,463	4,463	묘지,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714	이영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2	임	50,297	50,297	묘지,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1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3	임	4,066	4,066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478	상산김씨상 산군파총회				
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4	임	1,983	1,983	묘지,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1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1	임	24,057	24,057	임야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1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8	임	11,060	11,060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29 삼익아파트 107-305	김주환 (지분의 1/2)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670	유진석 (지분의 1/2)	의정부세무서	국 (압류)		
1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6	임	1,268	1,268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방부 (지분의 732/2000)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지분의 1268/2000)				
2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8	임	836	836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방부 (지분의 81/836)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지분의 755/836)				
2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6-2	임	732	732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방부 (지분의 732/2000)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지분의 1268/2000)				
2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7	임	227	227	임야,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2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2,747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1701.7/4661)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김기윤 (지분의 436.49/46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 동아아파트 13-813	김기홍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림리 418	김기준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인천직할시 금곡동 54	김용대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4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이희주 (지분의 145.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6	김건호 (지분의 145.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418	김신호 (지분의 24.2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3	김경호 (지분의 24.2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김성호 (지분의 96.986/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478	상산김씨상 산군파종회 (지분의 776.83/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2,746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1701.7/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김기윤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 동아아파트 13-813	김기홍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림리 418	김기준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인천직할시 금곡동 54	김용대 (지분의 436.49/46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4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이희주 (지분의 145.5/4661)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6	김건호 (지분의 145.5/4661)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418	김신호 (지분의 24.25/4661)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3	김경호 (지분의 24.25/4661)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김성호 (지분의 96.986/4661)				편입 면적 변경		
		산144-1	임	2,9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상산김씨상 산군파종회 (지분의 776.83/4661)						
		2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849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1701.7/4661)				편입 면적 변경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김기윤 (지분의 436.49/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 동아아파트 13-813	김기홍 (지분의 436.49/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림리 418	김기준 (지분의 436.49/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인천직할시 금곡동 54	김용대 (지분의 436.49/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4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이희주 (지분의 145.5/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6	김건호 (지분의 145.5/4661)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418	김신호 (지분의 24.25/46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3	김경호 (지분의 24.25/4661)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김성호 (지분의 96.98/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상산김씨상 산군파종회 (지분의 776.83/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895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1701.7/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김기윤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 동아아파트 13-813	김기홍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림리 418	김기준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인천직할시 금곡동 54	김용대 (지분의 436.49/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4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이희주 (지분의 145.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6	김건호 (지분의 145.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418	김신호 (지분의 24.2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3	김경호 (지분의 24.25/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남양주군 진접읍 금곡리 878-1 삼금아파트 나동 309호	김성호 (지분의 96.98/46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9	임	1,701		임야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478	상산김씨상 산군파종회 (지분의 776.83/46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10,246	창고 부지, 전,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3306/17554)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창고 부지, 전,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41길 4-6(우이동)	김재선 (지분의 387/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창고 부지, 전, 임야	농림지역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318	조택구 (지분의 13861/17554)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9,844	창고 부지, 전,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3306/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창고 부지, 전,임 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41길 4-6(우이동)	김재선 (지분의 387/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	임	13,398		창고 부지, 전,임 야	농림지역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318	조택구 (지분의 13861/17554)		
2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2,469	전,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6가길 5(중화동)	최명희 (지분의 5693 /17554)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 덕소아이파크 115-301	김승란 (지분의 5691/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덕소주공아파트 301-902	이상호 (지분의 5691/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41길 4-6(우이동)	김재선 (지분의 479/17554)		
26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2,484	전,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6가길 5(중화동)	최명희 (지분의 5693 /17554)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 덕소아이파크 115-301	김승란 (지분의 5691/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덕소주공아파트 301-902	이상호 (지분의 5691/175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1	임	2,683		전,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41길 4-6(우이동)	김재선 (지분의 479/17554)			
2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542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3306/17554)		편입 면적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임야	농림지역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389	김재선 (지분의 387/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임야	농림지역	서울 강북구 변동 526-51	김홍진 (지분의 13681/17554)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539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지분의 3306/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임야	농림지역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389	김재선 (지분의 387/175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2	임	573		임야	농림지역	서울 강북구 변동 526-51	김홍진 (지분의 13861/17554)		
2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	임	14,505	890	임야	농림지역	포천시 신읍동 33-27	이향직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	임	14,505	695	임야	농림지역	포천시 신읍동 33-27	이향직		
2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6	임	1,388	1,388	임야	농림지역	의정부시 호원동 451-4 우성5차아파트 502-403	양희중			
3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8	임	4,660	4,660	임야	농림지역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 송천마을뜨란채 213-701	최동수			
3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3	임	298	246	임야,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3	임	298	298	임야,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3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임	24,595	24,595	임야, 부대	농림지역	산림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70	임	198	52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70	임	198	198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3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69-1	임	3,998	175	부대	농림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69-1	임	3,998	374	부대	농림지역	산림청	국		
3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1	전	502	50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1	전	502	44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3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68	전	754	75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68	전	754	75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3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2-1	구	1,150	58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2-1	구	1,150	62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3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4	전	142	14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224	국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4	전	142	14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10	전	53	5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10	전	53	5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9	전	96	3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9	전	96	9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8	전	1,636	3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8	전	1,636	691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92-2	전	3,382	91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92-2	전	3,382	1,60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6	전	20	16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6-6	전	20	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9-1	전	152	15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9-1	전	152	15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5	전	400	371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5	전	400	40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6	전	479	33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6	전	479	47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3	전	261	78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3	전	261	261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4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4	임	2,131	1,641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4	임	2,131	1,75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4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4-2	임	7,786	1,806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4-2	임	7,786	1,78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5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4-1	구	595	59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5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7-1	전	1,279	1,059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224	국		편입 면적 변경 , 소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7-1	전	1,279	1,27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자 변경
5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1	임	793	36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1	임	793	79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5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2	임	1,119	86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2-2	임	1,119	1,119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5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0	전	589	4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정경제원 221	국			편입 면적 변경,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0	전	589	14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5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0-1	전	799	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정경제원 221	국			편입 면적 변경, 소유 자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0-1	전	799	49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5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1	임	4,066	1,00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1	임	4,066	2,46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5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4	전	73	21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5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6	전	169	29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2	전	1,535	1,225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2	전	1,535	1,235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6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7	도	194	47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7	도	194	45	부대	계획관리 지역	재무부	국		
6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4	도	295	6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4	도	295	3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6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3	임	298	298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6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0-6	가		11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가지번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0-6	가		24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가지번		
6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6	임	605	60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6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8	임	99	99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		
6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7	답	106	106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금호동 270-87	김초섭		
6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9	도	126	1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금호동 270-87	김초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9	도	126	2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성동구 금호동 270-87	김초섭		
6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5	도	196	11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편입 면적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5	도	196	12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6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8	임	2,397	89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육지 재단	국방부 226	국 (지상권 자)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8	임	2,397	89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육지 재단	국방부 226	국 (지상권 설정)	
7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1 1	임	397	397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천도교육지 재단			
7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7	임	150	150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99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7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5-1	임	198	198	부대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345	서일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80-2	소흘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소유 자 주소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5-1	임	198	198	부대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70길 40,101동 802호(도봉동,래 미안도봉아파트)	서일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80-2	소흘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박순자 (근저당 권자)	
7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5-3	도	99	9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7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5	도	1,063	488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5	도	1,063	627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7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3	임	893	829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3	임	893	89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7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527-33	도	1,815	426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527-33	도	1,815	40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0-4	전	17	17	부대	보전관리 지역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416	전주이씨임 영대군과봉 산군무림리 중친회			
7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8	임	3,366	351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변경 지번 제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8	임	3,366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7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7	임	9,009	3,669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7	임	9,009	953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8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4	도	499	195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4	도	499	157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8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6	임	6,237	2,885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46-6	임	6,237	3,286	부대	보전관리 지역	산림청	국			
8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5-1	임	1,289	84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국			변경 지번 제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5-1	임	1,289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국			
8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2-5	잡	1,319	65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변경 지번 제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2-5	잡	1,319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7	임	4,660	4,660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8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8-2	임	2,040	2,040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5-3	전	1,422	1,422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8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0-3	답	3,253	2,369	잡종 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10-3	답	3,253	2,409	잡종 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8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5	전	1,484	1,206	전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5	전	1,484	1,363	전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8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5	도	403	403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5	도	403	362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	답	975	975	수로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1	임	1,081	1,081	잡종 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9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3	임	476	476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	잡	3,154	2,778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	잡	3,154	3,154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6-1	도	509	424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6-1	도	509	509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8-1	도	192	192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6-4	임	623	623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국			
9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10	잡	1,144	1,14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10	잡	1,144	1,06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9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	잡	24,292	2,242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	잡	24,292	1,796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9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2	잡	1,067	26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변경 지번 제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2	잡	1,067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0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1	잡	3,370	4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44-1	잡	3,370	1,931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2	잡	364	5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변경 지번 제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72	잡	364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2	잡	24,682	10,32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2	잡	24,682	9,92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66	잡	13,243	9,25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66	잡	13,243	3,48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94-1	구	1,088	19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94-1	구	1,088	2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0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46-2	도	767	43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46-2	도	767	54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0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70	잡	14,737	6,71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70	잡	14,737	11,39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08	전	717	71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3-1	임	12,992	3,49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63-1	임	12,992	5,47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0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8	도	676	21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8	도	676	22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3	전	164	124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7-3	전	164	129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1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6	도	825	63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6	도	825	64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1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4	임	76	4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4-4	임	76	7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1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4	임	496	11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4	임	496	25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1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2	임	146	13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2	임	146	14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1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6	임	24	1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6	임	24	2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1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4	잡	2,293	99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4	잡	2,293	2,29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1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7	임	902	28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7	임	902	90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	답	3,170	70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	답	3,170	3,17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1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6	도	99	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6	도	99	9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9	임	99	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1-9	임	99	9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2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7	도	329	27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7	도	329	32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5	잡	648	56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5	잡	648	64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6	도	510	32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6	도	510	51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9-1	잡	7,902	3,69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9-1	잡	7,902	7,90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10	도	76	7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9	도	866	86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2	잡	1,221	1,221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11	임	297	8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11	임	297	13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2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13	잡	97	9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3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4	잡	1,101	1,01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0-4	잡	1,101	1,101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44-5	도	794	79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8-3	잡	344	29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98-3	잡	344	34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0-3	잡	56	1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0-3	잡	56	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08	잡	3,932	165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08	잡	3,932	1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3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2-1	잡	3,791	1,80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변경 지번 체척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2-1	잡	3,791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3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2	잡	1,828	1,31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2	잡	1,828	1,03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3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5	잡	1,602	8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5	잡	1,602	12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	잡	15,292	2,74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	잡	15,292	3,82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3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3	임	10,892	1,087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3	임	10,892	1,13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4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12	잡	30,109	43	부대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12	잡	30,109	7	부대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4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14	임	34,023	1,800	부대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80-14	임	34,023	2,162	부대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14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11	임	602	12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11	임	602	60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2	잡	19,552	47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7-2	잡	19,552	30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4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	잡	6,264	62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	잡	6,264	832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4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6	임	99	5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6	임	99	7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4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6	전	2,909	53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6	전	517	218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4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5	잡	1,400	216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5	잡	1,400	311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4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6	잡	709	78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편입 면적 변경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6	잡	709	115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14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8	도	213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2-8	도	213	7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15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7	잡	1,280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7	잡	1,280	348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3-3	도	198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3-3	도	198	14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5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5-3	임	984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5-3	임	984	753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국			
15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5	도	30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03-5	도	30	3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5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0-5	도	245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10-5	도	245	28	부대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155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1	잡	5,637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1	잡	5,637	1,666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56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1-6	잡	753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451-6	잡	753	753	부대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국방부 226	국			
157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76	임	496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	산176	임	496	322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8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4	전	60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9-4	전	60	6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59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7-2	전	69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7-2	전	69	6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60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6-1	잡	145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6-1	잡	145	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61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6-7	전	747	0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86-7	전	747	13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162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44-6	임	6,205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44-6	임	6,205	213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226	국			
163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03-2	잡	8,004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03-2	잡	8,004	1,479	부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4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9	전	2,392	0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지번 추가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19	전	2,392	569	부대	계획관리 지역	국방부	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0호('14.10.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정정사유 : 소유권 변동 및 지번합병, 소재지 오류에 따른 정정
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선하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변경구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또는 연장)	비고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88-12	727	농림지역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914-2	727	농림지역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3 (기9~10)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88-12	답	2,871	727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25-3	이기범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23m-55m)	소유자 변경 및 지번합병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914-2	답	4,236	727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25-3	한만혁	근저당권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117 302동512호(백산 아파트)	안중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지상23m-55m)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8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09-4	구	3,158	187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28m-5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09-4	구	3,158	187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28m-53m)	
19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4-4	답	1,218	7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령리 586	정완균				구분지상권 (상공29m-5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4-4	답	1,218	7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령리 586	정완균				구분지상권 (상공29m-53m)	
20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1	답	1,047	54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6-130	강석안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5m-5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1	답	1,047	54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6-130	강석안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5m-53m)	
21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8	답	1,500	6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47	강석안				구분지상권 (상공23m-50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8	답	1,500	6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47	강석안				구분지상권 (상공23m-50m)	
22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7	도	3,342	699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3m-50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7	도	3,342	699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3m-50m)	
23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9	도	1,322	298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2m-39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9	도	1,322	298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2m-39m)	
24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11	도	2,701	352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7m-4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11	도	2,701	352	국(건설부)					구분지상권 (상공17m-43m)	
25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4	답	1,268	239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2동201호	송홍섭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4	답	1,268	239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2동201호	송홍섭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26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6-5	답	2,853	1,111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2동201호	송홍섭				구분지상권 (상공16m-44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6-5	답	2,853	1,111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2동201호	송홍섭				구분지상권 (상공16m-44m)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27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09-13	구	30,897	851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8m-45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09-13	구	30,897	851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8m-45m)	
28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4	답	3,979	1,158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림리 586	심재숙				구분지상권 (상공17m-48m)	소재지 오류 정정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79 110동 505호 (늘푸른아파트)	김명동					
							경기도 평택시 점촌1로6번길 2동 비01호 (서정동,청송그린빌라)	김선동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4	답	3,979	1,158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림리 586	심재숙				구분지상권 (상공17m-48m)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79 110동 505호 (늘푸른아파트)	김명동					
							경기도 평택시 점촌1로6번길 2동 비01호 (서정동,청송그린빌라)	김선동					
29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4-5	구	1,374	22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1m-5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4-5	구	1,374	22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1m-51m)	
30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7	도	816	127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25m-52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7	도	816	127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25m-52m)	
31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8-5	구	588	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6m-5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8-5	구	588	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6m-51m)	
32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8-1	답	3,408	2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구분지상권 (상공26m-52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8-1	답	3,408	2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구분지상권 (상공26m-52m)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 소	성명		
33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0	도	1,602	88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27m-5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0	도	1,602	88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27m-51m)	
34 (10~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3-5	구	628	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7m-5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3-5	구	628	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7m-51m)	
35 (11)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3-4	답	4,928	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지상권 또는 소유권	소재지 오류 정정
						1,37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구분지상권 (상공19m-53m)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3-4	답	4,928	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지상권 또는 소유권	
						1,37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00	이종철				구분지상권 (상공19m-53m)	
36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1-1	답	4,343	81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358	김재익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6m-44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1-1	답	4,343	81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358	김재익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6m-44m)	
37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1-5	답	1,144	68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00-1	김재균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1-5	답	1,144	68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00-1	김재균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38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21-7	구	323	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21-7	구	323	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39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4	도	4,062	372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4	도	4,062	372	국(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40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6-6	구	138	13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3m-39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6-6	구	138	13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3m-39m)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 소	성명		
41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6-4	답	4,866	40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23	이정웅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6-4	답	4,866	40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23	이정웅				구분지상권 (상공14m-41m)	
42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6-7	구	272	2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6-7	구	272	2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43 (11~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6-5	답	676	67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23	이정웅				구분지상권 (상공15m-43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6-5	답	676	67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23	이정웅				구분지상권 (상공15m-43m)	
44 (12)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5-1	답	2,844	18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50-12	최덕기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또는 소유권	소재지 오류 정정
						39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50-12	최덕기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6m-43m)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5-1	답	2,844	18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50-12	최덕기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또는 소유권	
						39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50-12	최덕기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6m-43m)	
45 (12~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5-2	답	9,947	1,14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4길42	성제남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소재지 오류 정정
							경기도 평택시 평남길671 102동603호 (비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오명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37 106동1103호(비전동 한빛아파트)	오은숙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5-2	답	9,947	1,14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4길42	성제남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경기도 평택시 평남길671 102동603호 (비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오명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37 106동1103호(비전동 한빛아파트)	오은숙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호	변경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정정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46 (12~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1-4	답	4,952	855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자아파트 207-301	라명수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3m-39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1-4	답	4,952	855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자아파트 207-301	라명수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안중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3m-39m)	
47 (12~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1-3	답	5,031	85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46	이계생				구분지상권 (상공17m-39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1-3	답	5,031	85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46	이계생				구분지상권 (상공17m-39m)	
48 (12~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0-6	구	1,308	78	국(농림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4m-39m)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0-6	구	1,308	78	국(농림수산부)					구분지상권 (상공14m-39m)	
49 (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0-5	답	3,104	43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4-1	하봉철				지상권 또는 소유권	소재지 오류 정정
						69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4-1	하봉철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0-5	답	3,104	43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4-1	하봉철				지상권 또는 소유권	
						69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4-1	하봉철				구분지상권 (상공14m-43m)	
50 (13)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010-17	답	2,674	116	평택시			평택시		지상권 또는 소유권	소재지 오류 정정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10-17	답	2,674	116	평택시					지상권 또는 소유권	

● 환경부고시제201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64호, 2014. 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2호 중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를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를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가목 중 “또한 제조일자(고유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제품 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4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가음 각 호와 같다.

4.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중 “같다.”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융복합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융복합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2호 중 “위하여 인증제품의 모델 명칭에 고유한 명칭을 추가로 부여한 제품에 대하여는 파생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파생제품은 인증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를 “위한 제품에 대하여는 파생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파생제품의 모델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제품의 모델명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다른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2호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기술원장이 대상제품별로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1항 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1항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기업의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마. “가 목”부터 “라 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3항 중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7년 9월 25일”을 제8조 중 “2018년 1월 2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에 “EL204. 감지형 등기구”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EL204. 감지형 등기구 **【EL204-2001/5/2014-**】**”를 삭제하고, “EL210. LED 등기구 **【EL210-2011/5/2014-**】**”, “EL243. 보온단열재 **【EL243-1993/9/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257-2012/3/2014-**】**”, “EL321. 화장지 **【EL321-1992/9/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EL604-2001/5/2014-**】**”, “EL765. 소화기 **【EL765-2006/4/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감지형 등기구는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LED 등기구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LED 등기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②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기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도 불구하고 잔여 인증기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호

“금형편칭 스테드(R-스테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723 서울시서초구 잠원동 50-2(잠원로 14길 29)		
	전화번호	02-3483-7807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주)케이씨씨 (대표자 정몽익)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703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전화번호	031-288-3374	팩스번호	031-288-3330
	법인명(성명)	(주)케이씨씨건설 (대표자 정몽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3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513-5748	팩스번호	02-513-5797
	법인명(성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법인번호(주민번호)	274371-*****		
	주 소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전화번호	031-8005-3747	팩스번호	031-8005-4089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59 호
- 명 칭 : 금형편칭 스테드(R-스테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
-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수장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기존 벽체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셋기둥(R-스테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로를 차단하고, 수직 셋기둥(R-스테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이다.
- 신기술의 범위
금형편칭 스테드(R-스테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해 구조재와 마감재를 이격시켜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경량철골 설치(런너, 셋기둥, 채널), → 석고보드설치 → 글라스울 설치		
신기술 품	1. 경량철골 설치 (㎡)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050
	보통인부	인	0.011
	[주] 본 품은 먹매김, 철골틀설치(런너, 셋기둥, 채널 설치), 소운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2. 석고보드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8-2-1 판붙임/2.석고판/가.나사고정 “바탕용(1겹붙임)"] 참조			
[주] 석고보드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품셈[건축 17-1-1 도장 전 바탕만들기/2.석고보드면 “줄퍼티”]를 참조한다.			
3. 글라스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8-3-1 단열재/2.암면판 “격자넣기”] 참조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51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857,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250,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5년 선원최저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이다미	1987.07.23	여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0	1993.03.0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02 2013.01.09
김성수	1955.02.08	남	아르헨티나	원주시 중앙동 36	1976.12.3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2-068 2012.12.14
김순자	1961.08.15	여	미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37	2012.08.2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02 2013.01.09
황정아	1984.06.14	여	미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94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성별상이	2013-003 2013.01.21
조요셉	1982.02.25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흥파동 73	1991.09.1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03 2013.01.21
정순복	1961.03.25	여	호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28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03 2013.01.21
형은호	1981.09.04	남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	2005.12.10	국적선택불이행	등록기준지상이	2013-003 2013.01.21
김에릭	1986.05.11	남	브라질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619-19	2008.05.11	국적선택불이행	등록기준지상이	2013-003 2013.01.21
김정숙	1985.07.20	여	브라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51	2007.7.12	국적선택불이행	생년월일상이	2013-003 2013.01.21
김혜자	1957.12.20	여	미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5	2011.03.2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1 2013.03.06
이종화	1959.04.20	여	호주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04	2007.06.2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1 2013.03.06
이상진	1982.04.01	남	프랑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5-2	1987.11.2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3 2013.03.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승민지	1987.11.22	여	캐나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44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9 2013.03.26
허정옥	1955.11.10	여	뉴질랜드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19	1999.06.1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9 2013.03.26
최승호	1950.11.08	남	뉴질랜드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19	1999.06.1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19 2013.03.26
김지민	2006.08.10	남	캐나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성별상이	2013-020 2013.04.09
백락윤	1936.10.01	남	호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014	1983.03.04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20 2013.04.09
이지예	2001.11.09	여	영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0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 성별상이	2013-022 2013.04.16
이지성	2001.11.09	남	영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0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3-022 2013.04.16
손순익	1950.10.06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28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24 2013.05.03
박희민	1936.07.05	남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23-1	2003.05.1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26 2013.05.15
김영숙	1949.12.15	여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122	2011.12.0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26 2013.05.15
이성림	1944.12.15	여	캐나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산 28	1993.09.29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3-029 2013.05.23
김문주	1948.03.15	남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02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0 2013.06.18
여태한	1992.07.08	남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498	2013.03.1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0 2013.06.18
박순만	1983.01.28	남	프랑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29-18	1988.12.0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0 2013.06.18
박순찬	1980.07.09	남	프랑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29-18	1988.12.0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0 2013.06.18
이경	1988.08.08	여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462-5	2012.03.0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4 2013.07.15
이점석	1940.05.10	남	미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2012.10.28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상실일 상이	2013-034 2013.07.15
윤호진	1991.11.17	남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천리 74-2	2013.06.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등록기준지 상이	2013-034 2013.07.15
김원준	2002.12.23	남	캐나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38	2010.10.05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3-034 2013-07.15
유혜연	1980.08.26	여	미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	1988.05.19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36 2013.07.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유진희	1980.09.04	여	미국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2	1985.09.2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36 2013.07.26
유진옥	1982.06.20	여	미국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2	1982.06.2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36 2013.07.26
김준렬	1984.10.08	남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 229	2013.06.1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36 2013.07.26
김현숙	1963.12.26	여	미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927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36 2013.07.26
이경숙	1947.03.10	여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385	2002.08.0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36 2013.07.26
고석은	1985.02.28	여	파라과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26-98	2010.12.24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등록기준지상이	2013-042 2013.08.21
강성윤	1974.07.03	남	미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72	1995.10.2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43 2013.08.27
박명주	1952.06.15	여	미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164	1986.06.04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45 2013.09.05
이다자	1940.03.25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46-97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43 2013.08.27
최현숙	1967.07.05	여	미국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646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성별상이	2013-045 2013.09.05
방명희	1944.04.15	여	미국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42-8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상이	2012-050 2012.09.07
배정희	1960.02.09	여	미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5	2013.05.2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양신자	1943.07.21	여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216	1995.02.24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2-055 2013.10.24
하은주	1959.02.05	여	미국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72-5	2009.03.12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김현지	1991.10.01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347	2007.01.0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노현성	1980.07.04	남	미국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320	2009.07.0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이복순	1942.05.15	여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76	1974.05.3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김성은	1983.08.09	여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598	2010.04.09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상이	2013-055 2013.10.24
최연혁	1960.10.10	남	스웨덴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65-12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성별상이	2013-055 2013.10.24
이하류	1947.03.01	남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698	2000.04.0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김정희	1953.02.15	여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698	1986.08.2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최군자	1945.06.19	여	독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36	1980.06.0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55
								2013.10.24
백광렬	1958.03.13	남	캐나다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9-44	1977.01.17	외국국적취득	성명성별상이	2013-057
								2013.10.30
김영리	1953.01.20	여	뉴질랜드	서울시 중구 다동 155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64
								2013.11.22
박정진	1971.03.24	남	미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8-77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65
								2013.12.05
곽동규	1990.07.13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67	2013.05.0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65
								2013.12.05
최홍식	1962.05.25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50	1994.11.1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3-065
								2013.12.05
윤우용	1943.03.27	남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87	2007.11.08	외국국적취득	성명상이	2013-067
								2013.12.17
이누우에리가	1962.08.06	여	일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170	1996.07.06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성명상이	2011-008
								2011.10.27
황춘옥	1957.08.19	여	뉴질랜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7.12.1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04
								2014.01.27
김진섭	1957.02.14	남	뉴질랜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7.12.1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04
								2014.01.27
한민자	1948.12.01	여	호주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04
								2014.01.27
임정해	1961.12.20	여	미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181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상이	2014-010
								2014.03.05
서영주	1974.11.0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천동 67	2009.03.1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0
								2014.03.05
김희중	1951.10.14	여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360	2013.12.0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0
								2014.03.05
서춘옥	1934.10.22	여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8-2	1998.12.1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5
								2014.04.14
윤희중	1956.12.22	여	미국	서울시 동작구 본동 9	1989.08.1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5
								2014.04.14
김정연	1961.06.13	여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2-37	1996.09.1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5
								2014.04.14
이석완	1942.08.25	남	미국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34	1980.03.0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7
								2014.04.29
박건자	1946.06.01	여	미국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34	1980.03.0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7
								2014.04.29
박창환	1970.09.04	남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5	1996.08.0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상이	2014-017
								2014.04.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지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김록	1983.12.28	남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77	1987.03.24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17 2014.04.29
김지연	1979.12.25	여	미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93-5	1979.12.25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20 2014.05.14
고종호	1945.06.23	남	미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154	2005.03.29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20 2014.05.14
이승연	1993.05.07	여	캐나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 14	2013.11.22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25 2014.06.25
심은정	1969.08.22	여	미국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2014.04.0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25 2014.06.25
김정현	1983.01.04	남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90	2004.01.30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4-033 2014.08.19
황유나	1968.05.07	여	미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1.03.11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1 2014.07.21
이미화	1963.09.06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75	2007.12.14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31 2014.07.21
안미애	1982.04.10	여	미국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4-031 2014.07.21
이강원	1964.04.2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55	2013.08.1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1 2014-07.21
김시형	1995.04.10	남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99.06.29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일 상이	2014-031 2014.07.21
박경신	1951.01.20	남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922	2009.02.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3 2014.08.1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희	1972.12.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7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용빈	1988.02.26	남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1	2013.04.25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이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중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1호, 2014.4.16)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구 13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달성군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동구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지묘동, 진인동

나. 경상북도 :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22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다산면(곽촌리, 노곡리)
구미시	고아읍(괴평리 제외), 도개면(용산리 제외), 무을면(무이리, 백자리, 송삼리, 웅곡리), 선산읍, 옥성면(농소리, 대원리, 덕촌리, 주아리, 초곡리),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김천시	아포읍(의리, 인리, 지리)
성주군	선남면, 성주읍(삼산리, 성산리, 예산리, 학산리), 용암면, 월항면(인촌리 제외)
영천시	자양면, 화북면(자천리),
청도군	운문면(방지리 제외)
칠곡군	기산면, 석적읍(반계리, 중지리), 약목면(관호리, 덕산리, 동안리, 무림리), 왜관읍, 지천면(금호리, 연화리)
포항시	죽장면(상사리, 상옥리, 하사리, 하옥리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 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관보 제17478호, 2011.4.1) 및 2011-179호(관보 제17478호, 2011.6.13) 및 2011-301호(관보 제17628호, 2011.11.7) 및 2012-144호(관보 제17752호, 2012.5.1) 및 2012-383호(관보 제17885호, 2012.11.9) 및 2013-429호(관보 제18169호, 2013.12.26) 및 2014-145호(관보 제18275호, 2014.05.2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변경	일반국도	87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74	20m ~ 25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도로공사준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3. 03. ~ 2014. 12.

4. 사 업 명 : 마산 ~ 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TEL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	146-6	대	29	국					
2	144-16	답	111	국					
3	144-26	답	366	국					
4	144-3	도	281	국					
5	184-23	구	333	-					
6	184-24	구	35	-					
7	184-20	대	1	-					
8	186-20	대	2	국					
9	144-8	도	221	경기도					
10	184-21	구	182	-					
11	186-16	대	215	국					
12	144-15	답	433	국					
13	186-17	답	62	국					
14	143-2	도	403	국					
15	143-9	도	235	경기도					
16	143-1	도	122	포천시					
17	144-19	대	96	국					
18	144-14	답	60	경기도					
19	144-7	도	23	포					
20	144-2	답	340	심재균	가산면 가산로 389번길 5	가산농업협 동조합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9-2	근저당	
21	144-17	답	1	국					
22	144-18	답	1	포천시					
23	186-12	답	259	경기도					
24	186-15	대	188	국					
25	186-18	도	109	-					
26	186-14	답	10	포천시					
27	143-12	답	139	경기도					
28	143-13	답	125	국					
29	173-1	묘	36	국					
30	172-33	도	35	국					
31	186-19	구	2,854	국					
32	172-5	유	85	경기도					
33	172-17	유	535	경기도					
34	172-26	유	219	국					
35	172-31	유	9	국					
36	172-27	유	1	국					
37	172-28	유	3	국					
38	172-20	유	460	경기도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9	174-2	도	512	국					
40	142-3	도	116	포천시					
41	174-4	도	133	경기도					
42	174-10	대	2	국					
43	174-11	대	8	국					
44	174-8	대	12	경기도					
45	142-14	답	2	경기도					
46	142-19	답	2	국					
47	142-16	대	30	국					
48	142-11	대	54	경기도					
49	142-2	도	460	국					
50	142-5	도	90	경기도					
51	142-12	대	94	경기도					
52	142-17	대	49	국					
53	142-15	대	10	국					
54	142-10	대	18	경기도					
55	142-18	답	12	국					
56	142-13	답	15	경기도					
57	141-3	도	10	국					
58	141-17	답	992	국					
59	141-13	답	163	경기도					
60	141-2	도	251	국					
61	186-8	도	114	국					
62	141-11	도	93	경기도					
63	141-10	도	54	경기도					
64	141-5	도	300	경기도					
65	141-15	잡	118	국					
66	141-16	잡	9	국					
67	141-1	답	1,068	포천시					
68	141-4	잡	494	국					
69	141-18	답	263	국					
70	141-8	도	115	국					
71	140	도	259	경기도					
72	140-5	전	712	국					
73	140-4	구	144	국					
74	123-5	임	352	국					
75	123-1	도	24	국					
76	140-2	도	10	국					
77	138-4	도	37	국					
78	138-14	답	146	국					
79	138-13	구	318	-					
80	137-1	구	28	국					
81	137-2	도	145	경기도					
82	137-5	임	404	경기도					
83	138-12	답	3	경기도					
84	135-5	도	9	국					
85	136-2	도	153	국					
86	135-9	전	556	국					
87	136-3	도	466	국					
88	136-1	도	564	국					
89	136-4	천	219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0	136-5	전	597	국					
91	135-10	전	194	국					
92	135-11	천	246	국					
93	135-1	도	159	경기도					
94	134-8	천	1,412	국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	189-7	전	41	국					
2	189-6	대	13	국					
3	189-8	전	171	국					
4	188-7	대	105	-					
5	188-9	장	121	국					
6	188-8	장	98	국					
7	186-3	전	182	국					
8	185-1	도	461	국					
9	181-2	전	479	국					
10	180-3	도	286	경기도					
11	180-6	전	227	국					
12	180-7	전	318	국					
13	180-5	전	16	국					
14	183-8	천	91	국					
15	179-3	전	58	국					
16	179-7	천	578	국					
17	179-4	도	230	경기도					
18	179-2	전	48	국					
19	178-9	주	127	국					
20	178-2	도	17	국					
21	178-10	주	358	국					
22	177-2	도	261	국					
23	178-3	도	600	경기도					
24	178-11	대	374	국					
25	177-9	전	115	국					
26	177-5	도	86	국					
27	177-8	천	921	국					
포천시 군내면 마전리									
1	642-31	천	463	국					
2	642-30	천	311	국					
3	642-18	도	430	국					
4	642-34	천	133	-					
5	642-33	천	209	국					
6	642-29	잡	174	국					
7	642-2	도	79	국					
8	642-3	도	314	국					
9	642-32	창	381	국					
10	643-42	장	9	국					
11	643-37	장	336	국					
12	643-40	장	118	국					
13	644-5	도	793	국					
14	642-1	도	677	경기도					
15	643-27	도	928	경기도					
16	643-41	대	325	국					
17	643-38	대	127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	643-39	장	351	국					
19	622-33	전	67	국					
20	643-25	도	29	경기도					
21	622-30	전	130	국					
22	644-4	도	44	경기도					
23	644-10	도	40	경기도					
24	622-32	전	82	국					
25	644-1	도	169	경기도					
26	644-8	도	39	경기도					
27	644-3	구	40	국					
28	622-31	구	42	국					
29	644-2	도	51	경기도					
30	644-9	도	28	경기도					
31	644-11	전	99	국					
32	622-28	전	10	국					
33	620-3	도	36	국					
34	621-1	도	89	국					
35	621-4	도	156	경기도					
36	621-5	전	216	국					
37	622-29	전	62	국					
38	624-2	구	148	국					
39	620-2	전	4	국					
40	619-4	전	41	국					
41	618-4	도	626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	115-1	전	213	국					
2	114-5	전	1,135	국					
3	113-1	도	1,083	경기도					
4	1047-53	구	279	국					
5	120-2	전	3	국					
6	118-1	전	71	국					
7	1047-54	구	23	국					
8	113-2	답	399	국					
9	1047-51	천	814	국					
10	110-9	전	5	국					
11	112-2	전	14	국					
12	112-1	전	4	국					
13	110-7	전	2,058	국					
14	110-4	도	480	경기도					
15	110-3	도	321	국					
16	110-6	전	634	국					
17	1047-50	천	401	국					
18	107	답	194	국					
19	107-1	답	229	국					
20	106-1	묘	475	국					
21	106-3	도	232	국					
22	106-2	도	36	국					
23	104-3	도	82	국					
24	105-1	전	26	국					
25	105-4	전	395	국					
26	105-3	도	131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	105-2	도	23	국					
28	104-6	도	206	국					
29	104-7	답	212	국					
30	104-5	답	718	국					
31	104-4	도	269	국					
32	104-2	도	63	국					
33	103-2	전	115	국					
34	1047-49	천	552	국					
35	103-1	전	223	국					
36	102-5	답	170	국					
37	102-4	답	639	국					
38	96-4	답	126	국					
39	96-3	답	416	국					
40	96-2	도	176	경기도					
41	95-6	답	123	국					
42	95-5	답	761	국					
43	95-3	도	56	국					
44	95-4	답	324	국					
45	1048-28	도	741	국					
46	94-2	답	1,205	국					
47	87-5	도	107	경기도					
48	94-1	도	6	국					
49	88-3	답	442	국					
50	88-1	답	79	국					
51	87-2	답	723	국					
52	1047-47	천	11	국					
53	84-6	답	840	국					
54	84-4	답	2,493	국					
55	86-1	답	2,281	국					
56	87-6	전	1,054	국					
57	83-4	답	1,354	국					
58	1048-34	도	216	국					
59	82-1	답	2,464	국					
60	81-1	답	1,446	국					
61	27-1	답	1,601	국					
62	35-8	도	32	포천시					
63	1047-46	천	8	국					
64	35-9	목	46	포천시					
65	35-10	목	335	포천시					
66	31-9	답	512	포천시					
67	35-7	목	171	국					
68	34-1	전	50	포천시					
69	34-2	전	487	국					
70	31-3	답	12	포천시					
71	31-11	답	63	포천시					
72	1048-37	도	10	국					
73	24-5	답	140	국					
74	21-2	답	195	국					
75	20-1	답	923	국					
76	1048-30	도	199	국					
77	20-4	답	5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8	19	답	16	국					
79	26-2	답	10	국					
80	26-1	답	5	국					
81	19-3	답	38	국					
82	80-3	답	426	국					
83	29	답	688	국					
84	28-1	답	597	국					
85	19-1	답	1,799	국					
86	18	답	1,114	국					
87	1047-45	천	2,234	국					
88	30-3	답	417	포					
89	30-2	도	182	포					
90	31-8	답	1,645	국					
91	31-6	답	246	포천시					
92	1048-25	도	263	국					
93	31-4	답	42	포천시					
94	17-6	답	2,194	국					
95	16-1	도	532	포천시					
96	9-1	답	244	국					
97	9-3	답	158	국					
98	9-2	답	23	국					
99	11-20	답	145	국					
100	11-17	답	139	국					
101	10-1	답	456	포천시					
102	10-2	도	49	국					
103	1048-31	도	374	국					
104	16-1	도	532	포천시					
105	15-3	답	605	포천시					
106	10-4	도	120	국					
107	11-11	답	32	포천시					
108	15-2	도	89	포천시					
109	17-7	답	1,201	국					
110	16-8	답	905	국					
111	16-7	답	224	국					
112	15-4	답	1,125	국					
113	14-1	천	143	국					
114	1048-32	도	271	국					
115	13-4	도	80	포천시					
116	13-3	답	173	경기도					
117	11-15	답	96	포천시					
118	11-18	답	190	국					
119	11-13	답	133	포천시					
120	12-2	도	10	경기도					
121	12-1	도	50	포천시					
122	11-5	도	410	포천시					
123	11-1	도	13	경기도					
124	11-14	답	83	포천시					
125	11-4	답	1,313	국					
126	11-19	답	320	국					
127	11-16	답	1,462	국					
128	8-4	도	114	경기도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9	8-5	답	945	국					
130	8-6	답	192	국					
131	8-2	도	129	포천시					
132	산5-5	구	197	국					
133	7-11	천	57	국					
134	7-10	장	486	국					
135	산5-2	도	139	국					
136	7-5	도	426	국					
137	5-5	도	18	-					
138	7-3	도	67	경기도					
139	7-1	도	19	곽상용	서울 성북구 장위동 166-21				
140	5-4	도	55	-					
141	6-1	도	74	김삼순	군내면 명산리 204				
142	6-4	도	52	국					
143	6-3	도	17	경기도					
144	6-5	답	17	국					
145	5-2	도	8	국					
146	5-3	도	347	-					
147	2-1	도	175	국					
148	2-3	도	72	국					
149	2-4	대	119	국					
150	1-11	임	3	국					
151	1-9	장	9	국					
152	1-7	전	339	국					
153	1-3	도	263	국					
154	1-10	잡	253	국					
155	1-1	도	311	경기도					
156	산1-2	도	246	경기도					
157	산1-1	도	496	국					
158	1-8	장	136	국					
159	1-12	장	34	국					
160	1049-11	천	326	국					
161	1049-10	천	225	국					
162	1049-9	천	668	국					
163	1049-6	도	231	국					
164	1041-13	전	21	국					
165	1041-14	전	174	국					
166	1041-15	전	167	국					
167	1042-9	전	186	국					
168	1042-7	대	6	국					
169	1042-10	전	72	국					
170	1042-8	대	125	국					
171	1041-5	도	951	경기도					
172	1042-3	도	612	국					
173	1043-11	장	72	국					
174	1043-13	도	94	국					
175	1043-14	도	35	국					
176	1043-12	대	556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77	1045-7	대	224	국					
178	1045-3	대	254	국					
179	1045-5	대	572	국					
180	1045-9	전	102	국					
181	1046-4	전	70	국					
182	198-4	전	632	국					
183	197-3	전	3,255	국					
184	196-8	전	1,188	국					
185	196-9	전	928	국					
186	196-10	전	4	국					
187	195-5	전	8	국					
188	196-5	전	2,613	국					
189	195-3	전	1,825	국					
190	197-4	전	132	국					
191	196-1	전	60	국					
192	199-3	전	812	국					
193	199-2	전	1,339	국					
194	202-3	전	290	국					
195	203-2	전	3,484	국					
196	203-4	전	1,659	국					
197	203-1	잡	551	국					
198	205-9	전	248	국					
199	205-11	장	4	국					
200	205-13	전	64	국					
201	205-10	장	301	국					
202	205-14	장	204	국					
203	205-12	전	39	국					
204	205-8	전	272	국					
205	204-4	대	1,422	국					
206	204-5	전	18	국					
207	224-9	전	317	국					
208	223-5	전	286	국					
209	224-3	전	10	국					
210	223-3	전	26	국					
211	205-7	구	7	국					
212	224-10	전	55	국					
213	224-11	대	1,293	국					
214	223-4	대	1,274	국					
215	222-4	전	798	국					
216	222-1	도	1,286	경기도					
217	224-8	대	195	국					
218	231-5	도	67	국					
219	222-5	전	179	국					
220	222-6	전	77	국					
221	231-6	임	340	국					
222	231-4	장	1,578	국					
223	231-3	도	42	경기도					
224	231-7	도	586	경기도					
225	231-1	도	83	경기도					
226	231-8	임	33	국					
227	254-6	도	105	경기도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8	254-2	도	75	경기도					
229	254-8	도	57	국					
230	254-5	도	140	국					
231	232-1	잡	1,699	국					
232	253-1	전	242	국					
233	254-7	도	3	국					
234	255-9	도	18	김홍수	군내면 포천로 1048-46				
235	255-10	도	11	국					
236	255-8	도	98	국					
237	255-6	전	1	국					
238	255-7	도	183	경기도					
239	255-5	도	69	라동학	군내면 반월산성로 272번길 73				
240	255-2	도	34	경기도					
241	252-3	도	62	김창수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2길 90 703동				
242	252-8	도	35	국					
243	256-2	도	79	경기도					
244	257-10	도	37	경기도					
245	252-6	도	518	국					
246	252-5	전	2,916	국					
247	257-8	도	364	경기도					
248	257-3	도	53	경기도					
249	252-7	전	10	국					
250	252-2	도	40	국					
251	257-9	도	391	경기도					
252	257-11	장	10	경기도					
253	257-7	답	12	경기도					
254	249-13	답	1,801	경기도					
255	249-9	답	61	경기도					
256	247-1	도	3,205	경기도					
257	258-7	도	4	이상선	군내면 좌의리 51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258	258-2	도	49	국					
259	258-6	답	75	국					
260	249-12	잡	488	국					
261	249-3	잡	145	국					
262	258-5	도	135	국					
263	258-3	도	16	국					
264	258-4	답	57	국					
265	248-9	도	65	국					
266	249-10	도	24	국					
267	249-11	도	20	국					
268	248-7	전	386	국					
269	248-8	답	638	국					
270	248-4	도	189	국					
271	258-14	답	-	-					
272	247-9	답	179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3	259-2	도	941	경기도					
274	259-11	잡	747	국					
275	259-13	답	264	국					
276	259-1	대	1,227	국					
277	259-12	답	272	국					
278	247-10	전	39	국					
279	247-8	잡	149	국					
280	296-11	도	73	경기도					
281	296-13	도	47	경기도					
282	296-10	잡	125	국					
283	296-8	대	1,008	국					
284	295-4	답	1,013	국					
285	246-3	전	99	국					
286	296-3	도	835	경기도					
287	296-9	잡	41	국					
288	296-1	공	1,382	국					
289	295-3	공	336	국					
290	296-14	전	59	국					
291	292-20	대	124	국					
292	292-25	전	53	국					
293	292-21	잡	116	국					
294	292-23	전	2,017	국					
295	292-22	잡	92	국					
296	292-3	전	203	국					
297	292-26	전	17	국					
298	292-17	전	61	국					
299	1048-41	도	164	국					
300	1048-35	장	12	국					
301	293-3	전	10	국					
302	293-1	전	98	포천시					
303	289-10	전	57	국					
304	289-11	전	917	국					
305	292-28	전	388	국					
306	292-3	전	203	국					
307	289-12	답	2,093	국					
308	289-13	답	2,889	국					
309	289-14	구	12	국					
310	288-1	답	34	국					
311	315-4	구	151	국					
312	287-7	답	1,307	국					
313	286-7	대	1,265	국					
314	316-12	목	34	국					
315	316-4	도	737	경기도					
316	316-11	답	252	국					
317	317-4	전	304	국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18	286-2	도	13	국					
319	286-13	도	6	국					
320	318-5	전	371	국					
321	319-4	전	1,485	국					
322	319-2	도	264	국					
323	286-14	전	2,828	국					
324	282-1	도	2,302	경기도					
325	320-1	전	177	경기도					
326	1048-26	도	1,568	-					
327	321-5	전	201	국					
328	321-4	전	632	국					
329	321-2	도	150	경기도					
330	285-9	도	52	국					
331	285-12	도	27	국					
332	286-22	대	11	-					
333	286-23	대	20	-					
334	285-8	대	136	국					
335	285-11	대	161	국					
336	285-10	전	92	국					
337	285-13	전	122	국					
338	322-14	잔	216	국					
339	322-12	전	676	국					
340	322-4	도	145	국					
341	282-11	전	189	국					
342	282-12	전	160	국					
343	284-5	전	326	국					
344	284-6	전	297	국					
345	322-15	전	108	국					
346	322-13	전	148	국					
347	322-3	도	76	경기도					
348	322-16	대	157	국					
349	322-11	대	212	국					
350	333-2	도	116	국					
351	332-16	답	21	국					
352	332-13	답	34	국					
353	332-7	도	4	경기도					
354	332-3	도	10	국					
355	332-17	도	32	국					
356	332-15	도	78	국					
357	332-18	답	22	국					
358	332-14	답	9	국					
359	1048-36	전	11	국					
360	333-9	전	56	국					
361	333-6	전	225	국					
362	333-11	전	124	국					
363	333-8	전	53	국					
364	333-10	전	6	국					
365	333-7	전	75	국					
366	115-4	전	8	포천시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1	535-12	구	63	국			
2	518-2	도	127	경기도			
3	518-5	전	20	국			
4	518-7	전	247	국			
5	517-24	도	17	국			
6	517-20	답	150	국			
7	517-28	답	280	국			
8	517-2	도	670	경기도			
9	517-23	도	463	국			
10	517-19	장	26	국			
11	517-27	장	103	국			
12	517-17	장	2	국			
13	517-12	도	37	국			
14	517-25	장	209	국			
15	517-16	장	7	국			
16	517-21	도	170	국			
17	517-22	도	45	국			
18	517-18	답	48	국			
19	517-26	답	395	국			
20	517-4	도	1	국			
21	517-1	도	15	국			
22	516-7	도	33	국			
23	516-4	도	33	국			
24	516-8	전	230	국			
25	534-6	구	256	국			
26	534-12	구	14	국			
27	505-6	도	128	-			
28	506-5	도	81	-			
29	506-16	대	91	국			
30	506-18	대	71	국			
31	104-3	전	26	이상선	군내면 좌의리 51	농업협동조 합중양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32	506-4	도	13	포천시			
33	506-17	도	25	포천시			
34	506-14	도	5	포천시			
35	506-15	도	1	경기도			
36	506-1	도	119	경기도			
37	505-5	도	26	-			
38	505-4	도	100	-			
39	505-3	도	34	경기도			
40	505	도	43	경기도			
41	534-11	천	191	국			
42	495-8	도	490	경기도			
43	495-2	도	40	경기도			
44	495-9	대	74	국			
45	495-3	도	347	국			
46	495-1	도	443	국			
47	535-11	도	719	국			
48	494-1	도	49	경기도			
49	485-3	도	147	경기도			
50	485-4	도	155	국			
51	485-13	도	863	경기도			

52	486-3	도	188	경기도					
53	486-26	임	36	국					
54	486-25	임	37	국					
55	486-23	장	169	국					
56	485-12	도	169	경기도					
57	485-9	장	60	국					
58	485-11	도	4	국					
59	460-17	도	12	경기도					
60	460-18	도	12	경기도					
61	460-11	도	146	경기도					
62	460-16	장	52	국					
63	460-19	장	27	국					
64	461-2	도	122	국					
65	461-1	도	12	경기도					
66	461-4	답	471	국					
67	461-5	답	158	국					
68	535-10	도	245	국					
69	462-2	도	311	국					
70	462-1	도	100	국					
71	462-4	답	624	국					
72	462-5	답	9	국					
73	534-9	천	400	국					
74	463-8	전	7	신유십	군내면 좌의리 59				
75	463-7	전	381	국					
76	463-2	도	21	국					
77	534-10	구	267	국					
78	463-6	답	50	국					
79	468	천	63	국					
80	469-1	답	9	국					
81	481-5	전	1,953	국					
82	479-2	도	215	국					
83	478-1	도	1,227	경기도					
84	479-4	전	1,292	국					
85	478-2	도	281	국					
86	478-5	답	1,621	국					
87	535-9	도	491	국					
88	478-3	잡	400	국					
89	476-2	답	341	국					
90	476-1	도	10	국					
91	475-1	도	5	국					
92	475-4	전	79	국					
93	산14-7	임	420	국					
94	산14-4	도	1,012	경기도					
95	산14-7	임	420	국					
96	산1-1	도	397	국					
97	산14-6	임	33	국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1	1-8	장	19	김재홍	군내면 용정리 15				
2	89-36	임	33	국					
3	89-29	임	120	국					
4	89-28	임	36	국					

5	산13-2	도	392	경기도					
6	산13-4	도	389	경기도					
7	89-27	장	185	국					
8	산13-1	도	893	국					
9	산12-43	도	1,641	경기도					
10	산12-41	임	1,226	국					
11	89-26	장	130	국					
12	89-35	장	64	국					
13	산12-38	임	179	국					
14	산12-37	임	210	경기도					
15	산12-21	도	730	경기도					
16	산12-44	임	100	국					
17	산12-4	임	636	국					
18	산12-40	임	971	국					
19	87-2	전	1,115	국					
20	산12-39	임	289	국					
21	산12-18	도	860	경기도					
22	산12-42	도	990	경기도					
23	산12-46	임	87	국					
24	산12-45	도	546	경기도					
25	6-20	장	3	국					
26	89-34	장	54	국					
27	89-21	전	61	국					
28	88	전	906	경기도					
29	474-12	도	796	국					
30	89-24	장	191	국					
31	89-33	장	29	국					
32	산13-6	임	433	경기도					
33	89-32	장	41	국					
34	89-23	장	38	국					
35	산13-5	임	33	경기도					
36	89-1	전	455	경기도					
37	86-4	전	3,005	국					
38	83-1	답	171	국					
39	89-31	장	7	국					
40	89-22	장	16	국					
41	89-21	전	61	국					
42	86-3	전	172	경기도					
43	78-2	답	1,558	국					
44	78-4	답	1,569	국					
45	79-3	답	879	국					
46	78-3	답	349	경기도					
47	78-6	답	277	경기도					
48	79-6	수	49	국					
49	79-7	수	211	국					
50	79-8	답	93	국					
51	79-4	답	450	국					
52	474-10	도	223	국					
53	73-6	답	1,656	국					
54	73-3	답	352	국					
55	38-5	전	175	국					
56	산5-13	임	187	국					
57	74-1	답	2,403	국					

58	73-5	답	65	국					
59	72-2	답	1,611	국					
60	산5-12	임	124	국					
61	71	전	1,606	국					
62	산5-11	임	1,227	국					
63	산5-14	임	585	국					
64	78-5	답	14	경기도					
65	78-7	수	116	국					
66	78-8	수	128	국					
67	77-2	답	371	국					
68	77-3	답	60	경기도					
69	76-1	답	380	경기도					
70	76-3	답	154	경기도					
71	76-2	답	1,489	국					
72	75	답	2,304	국					
73	474-9	도	628	국					
74	70-5	답	166	경기도					
75	70-11	답	388	경기도					
76	70-9	답	26	경기도					
77	70-8	답	44	경기도					
78	70-6	전	668	국					
79	70-3	답	77	경기도					
80	70-10	답	96	국					
81	70-7	답	56	국					
82	70-4	전	75	국					
83	68-1	답	40	경기도					
84	68-4	답	108	경기도					
85	68-3	답	182	경기도					
86	68-2	답	75	국					
87	72-1	답	78	경기도					
88	67-4	전	83	국					
89	67-3	대	92	국					
90	67-2	대	21	국					
91	71-1	전	384	경기도					
92	산5-8	도	101	국					
93	산5-10	도	395	국					
94	산5-9	임	299	경기도					
95	산4-40	임	337	국					
96	산4-32	임	1,157	국					
97	산4-28	임	147	국					
98	66-1	전	201	국					
99	66-2	전	26	국					
100	산4-37	임	140	국					
101	산4-36	임	112	국					
102	산4-27	임	34	경기도					
103	산4-39	임	238	국					
104	산4-38	임	32	국					
105	47-11	장	23	국					
106	47-27	장	17	국					
107	47-14	주	44	국					
108	47-25	주	106	국					
109	47-12	대	9	국					
110	47-26	대	19	국					

111	47-24	대	16	국					
112	47-22	대	374	국					
113	47-23	대	96	국					
114	46-4	대	20	국					
115	산4-35	임	783	국					
116	46-1	전	299	국					
117	산4-26	임	160	포천시					
118	산4-31	임	645	국					
119	48-18	잡	27	국					
120	237-12	전	561	경기도					
121	237-37	전	15	국					
122	산1-5	임	150	국					
123	산1-4	임	83	경기도					
124	44-1	전	348	경기도					
125	44-2	전	45	포천시					
126	44-3	전	447	국					
127	44-4	전	18	국					
128	43-2	임	100	포천시					
129	43-3	임	2,679	국					
130	43-4	임	1,369	경기도					
131	43-1	임	55	경기도					
132	42-1	전	185	경기도					
133	42-2	전	78	경기도					
134	42	전	21	국					
135	260-12	임	59	국					
136	260-5	도	33	국					
137	260-13	대	623	국					
138	260-11	대	464	국					
139	41	임	272	국					
140	41-2	임	171	경기도					
141	41-1	임	347	경기도					
142	261-1	전	765	경기도					
143	261-2	전	916	국					
144	262-3	전	241	국					
145	262-4	전	1,063	경기도					
146	262-2	전	131	경기도					
147	263-9	전	758	경기도					
148	263-8	전	4	국					
149	264-23	대	2	경기도					
150	263-4	전	162	경기도					
151	263-3	도	13	포천시					
152	264-22	대	208	국					
153	264-25	대	4	국					
154	264-21	전	9	경기도					
155	264-12	전	36	경기도					
156	264-11	도	77	경기도					
157	264-24	대	64	국					
158	264-26	도	6	국					
159	264-10	대	119	경기도					
160	265-25	대	37	국					
161	265-24	대	9	국					
162	265-26	대	19	국					
163	264-1	도	33	경기도					

164	291-39	창	97	국					
165	291-10	잡	150	경기도					
166	291-3	도	112	경기도					
167	291-35	대	2	국					
168	291-37	대	1	국					
169	291-33	대	3	국					
170	291-34	대	21	국					
171	291-22	대	6	경기도					
172	291-36	대	51	국					
173	291-21	대	2	경기도					
174	291-38	대	51	국					
175	291-32	대	40	국					
176	291-19	대	453	경기도					
177	291-2	도	96	국					
178	291-16	도	2	국					
179	298-5	도	19	국					
180	298-10	도	7	경기도					
181	298-11	전	44	국					
182	298-12	전	408	국					
183	298-6	전	1,651	경기도					
184	298-8	전	4	국					
185	298-7	전	54	국					
186	298-3	도	432	국					
187	298-1	전	304	국					
188	297-4	임	95	국					
189	292-2	전	285	국					
190	292-1	전	159	국					
191	293-1	임	232	국					
192	293-2	임	34	국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	산3-4	임	196	포천시					
2	산3-3	도	353	경기도					
3	593-3	전	18	국					
4	산5-37	도	316	국					
5	597-14	답	389	경기도					
6	597-15	답	26	국					
7	597-12	대	625	국					
8	737-20	구	373	국					
9	598-2	도	53	경기도					
10	598-3	답	119	경기도					
11	598-1	답	22	경기도					
12	599-2	도	26	국					
13	599-1	답	5	국					
14	597-16	답	62	국					
15	600-1	답	380	국					
16	600-5	도	123	경기도					
17	600-4	도	80	국					
18	738-1	도	579	국					
19	602-1	도	7	경기도					
20	600-2	도	145	국					
21	600-6	도	55	경기도					
22	601-2	도	17	국					
23	601-3	임	479	국					

24	650-1	답	109	국					
25	650-2	도	63	국					
26	607-9	답	174	경기도					
27	606-9	답	326	경기도					
28	606-12	답	24	경기도					
29	597-2	도	33	국					
30	606-1	답	13	국					
31	605-1	답	40	국					
32	603-6	답	35	국					
33	603-9	답	22	국					
34	603-5	답	133	국					
35	603-2	답	256	국					
36	603-7	답	40	국					
37	602-8	대	326	국					
38	602-10	대	147	국					
39	602-11	대	28	국					
40	604-3	답	14	국					
41	602-5	답	1,422	경기도					
42	602-9	전	449	국					
43	602-7	전	206	국					
44	602-6	천	74	경기도					
45	644-12	답	34	국					
46	644-8	답	4	국					
47	644-10	답	265	국					
48	644-3	답	2	경기도					
49	644-4	답	79	경기도					
50	644-5	답	336	국					
51	644-9	답	33	국					
52	644-11	답	99	국					
53	642-4	답	13	국					
54	645-1	대	98	국					
55	646-2	답	164	국					
56	646-1	답	16	국					
57	645-4	답	253	국					
58	645-3	답	23	경기도					
59	737-21	구	541	국					
60	649-4	도	18	국					
61	649-2	도	55	국					
62	649-3	답	52	국					
63	651-3	도	52	국					
64	651-4	도	4	포천시					
65	651-1	답	34	국					
66	651-2	도	106	국					
67	737-22	구	242	국					
68	654-2	도	12	국					
69	654-3	답	21	국					
70	654-9	답	9	국					
71	653-1	답	176	국					
72	651-8	대	957	국					
73	649-1	답	865	-					
74	651-9	답	215	국					
75	654-12	대	380	국					
76	654-5	답	399	국					

77	654-6	도	232	국					
78	654-8	답	29	국					
79	737-16	구	500	국					
80	651-10	답	30	국					
81	654-14	대	22	-					
82	654-7	도	143	국					
83	654-13	대	48	국					
84	654-15	대	17	국					
85	431-15	대	8	국					
86	428-15	대	68	국					
87	428-10	답	31	국					
88	428-17	답	42	국					
89	428-15	대	68	국					
90	428-11	대	83	국					
91	428-12	대	166	국					
92	428-16	대	86	국					
93	427-11	도	4	국					
94	427-15	도	3	국					
95	427-13	대	73	국					
96	427-9	대	193	국					
97	427-3	도	10	국					
98	427-16	전	51	국					
99	427-12	전	150	국					
100	427-5	전	41	경기도					
101	427-14	전	155	국					
102	427-10	전	501	국					
103	427-6	전	124	경기도					
104	427-4	도	46	경기도					
105	421-1	전	58	경기도					
106	421-5	전	101	국					
107	421-3	전	1,709	국					
108	421-4	전	377	경기도					
109	421-2	전	253	경기도					
110	419-6	전	126	경기도					
111	산56-48	임	209	국					
112	419-11	전	33	-					
113	474	답	770	안유진, 안홍진	군내면 청군로 3298				
114	414-2	임	1,637	국					
115	산56-33	임	1,341	국					
116	산56-37	임	126	국					
117	산56-49	임	113	국					
118	산56-18	임	227	전주이씨 익안대군 파쳐사공 손종친회	군내면 구읍리 330				
119	산56-34	임	2,903	국					
120	산56-19	임	1,114	경기도					
121	산56-38	임	296	경기도					
122	산56-20	임	139	이상주외 6명	양주시 고읍도 94 현대아파트 101-1001				
123	산56-35	임	1,132	국					

124	산56-21	임	761	경기도					
125	산56-39	임	103	국					
126	산56-22	임	50	이상주외 6명	양주시 고읍도 94 현대아파트 101-1001				
127	402-5	전	81	국					
128	402-6	전	70	국					
131	산56-40	임	386	국					
132	산56-23	임	748	경기도					
133	산56-17	도	4,661	국					
134	402-7	장	1,089	국					
135	산56-43	임	615	국					
136	산56-42	임	124	국					
137	산56-41	임	20	국					
138	401-5	대	923	국					
139	401-17	대	78	국					
140	산56-46	임	161	국					
141	산56-36	임	1,311	국					
142	산56-24	임	338	경기도					
143	401-18	전	19	국					
144	401-4	전	38	국					
145	401-8	전	634	국					
146	산56-31	임	363	국					
149	401-19	전	77	국					
150	401-20	대	31	국					
151	산56-44	임	1,034	국					
153	401-16	임	170	국					
154	산54-14	임	638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3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폐수처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6-9번지
 - 면적 : 3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11. ~ 2020. 2.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우도항대염 등부표	N 33° 29' 29.3" E 126° 56' 51.7"	Fl(4)Y8s	3	황원추형	2015. 1.14.	공사목적용	'15.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포스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 전	군산항 포스코건설	N 35° 58' 35.6" E 126° 32' 10.8"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변경 후	A호등부표	N 35° 58' 35.1" E 126° 32' 10.4"						
변경 전	군산항 포스코건설	N 35° 58' 36.1" E 126° 32' 28.5"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변경 후	B호등부표	N 35° 58' 35.9" E 126° 32' 28.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 허가량 : 9,000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50 m²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31.5m³/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9. ~ 2020. 1. 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 허가량 : 181,440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지방하천)
- 점용면적 : 2,191m²
- 공작물 설치 명세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5. ~ 2020. 1.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이종조
 -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 공사개요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1. 15. ~ 2015. 6.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노상국(경서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238-1(경서섬유)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15-1번지
변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552-18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m³/일

8. 허가면적 : 당초 28m²
 변경 32m²
8. 허가기간 : (당초) 2010. 2. 24. ~ 2014. 12. 31.(58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7. 12. 31.(36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D1,000mm×H4.0m) 3개소
 - 취수관(D50mm×L150.0m) 2열
 - 취수펌프3.73kW(5HP) 3대.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m ²)	지정면적(m ²)	수종	비고
계	13필지	-	-	-	2,310,081	2,310,081	-	
201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7	국(산림청)	임야	883	883	제주고사리삼, 대홍란, 개가시나무, 순채, 나도고사리삼, 골고사리 등 개가시나무, 제주고사리삼, 순채, 백서향 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178	"	"	2,120	2,120		
	"	971	"	"	1,293	1,293		
	"	972	"	"	2,909	2,909		
	"	981	"	"	810	810		
	"	1045	"	"	251	251		
	"	1047	"	"	456	456		
	"	1048	"	"	400	400		
	"	1049	"	"	635	635		
	"	산10-11	"	"	20,945	20,945		
	"	산10-12	"	"	17,702	17,702		
	"	산10-13	"	"	19,448	19,448		
	"	산15	"	"	23,207	23,207		
	"	산25-3	국(산림청)	임야	10,393	10,393		
	"	산25-4	"	"	6,468	6,468		
	"	산6	"	"	312,585	312,585		
"	산7	"	"	34,512	34,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2	"	"	199,339	199,339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수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환경면 저지리	산36-1	"	"	883,785	883,785		
	"	산41-1	"	"	35,579	35,579		
	"	산41-2	"	"	35,578	35,5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환경면 청수리	산1-5	"	"	255,370	255,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1	"	"	445,413	445,413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21) 또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064-730-725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1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시구역
1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6분51초 나. 월도 동단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126도28분10초 다.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 북위36도19분08초 동경126도26분51초 라. 보령시 신흑동 서단 북위36도19분28.57초 동경126도30분03초 마. 송도 서단 북위 36도23분07초 동경126도28분45초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36도26분17초 동경126도31분00초 사. 혜독동 동단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126도30분44초
2	홍원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서방과제 끝단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07초선과 동방과제(북위36도09분35초 동경126도30분17초)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1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호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전남 여수시 중앙로 26(교동 630)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신용분석사』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분석사』 민간자격 재공인

1.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3.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8

4. 대표자

성 명 : 이 장 영

생 년 월 일 : 1955. 1. 25.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5길 11, 101동 2201호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신용분석사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5년 1월 20일 ~ 2020년 1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5-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 등록번호 : 9
- 단체명칭 :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103호
- 대표자 성명 : 박 호 순
- 등록일자 : 2009년 3월 18일
- 주된사업 : 통일안보정책 연구와 교육을 통한 안보 · 통일관 정립
- 연락처 : 02) 778-4202
- 주관과 : 정신전력정책과
-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 중구 정동 34-17, 1층"을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10, 103호"로),
대표자("임재문"을 "박호순"으로) 등록변경

●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최초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52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89 세종로공영주 차장 B1층 13호	최용상	'15. 1. 16.	· 한·일 양국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민간단체 인권·평화 교류사업 · 대일항쟁기 진상규명, 희생자 위령제, 유족 및 생존자 지원사업 등	02-3676 -3671	사회통합 지원과	신규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조항과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

- 1)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 제9조)
- 2) 특정사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9조의2)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화 : 044-203-4327
-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mpark@motie.go.kr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 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
- 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화 : 044-203-4327
 -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mpark@motie.go.kr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지·보조기기사 보수교육 담당기관을 국립재활원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규정 간소화(제48조 삭제)
 나.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개정(안 제 61조 개정)
 -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주체를 국립재활원장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5,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7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특성상 날개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Tea-bag,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에 대한 개별포장을 포함하여 현재 포장기술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상 날개로 포장’된 경우에 Tea-bag 개별포장을 유통과정상 제품이 혼합되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인정하고,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의 개별포장을 유통과정상 제품이 접촉되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환경부공고 제201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을 면제하고,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를 7,5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의원발의 법률안(‘13.5 김영주의원 발의안, ’15.1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월중 공포 예정)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를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 명시(안 시행령 제55조의2 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생태원을 정하고자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면제(안 별표3 제2호라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면제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완화(안 별표4 제5호나목)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chyo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27(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15.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제2조 신설)

- 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신규 지정

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안 제7조 신설)

-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8조 신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계획 등을 규정

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신설)

-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신설, 부칙추가)

- 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

1) 자격시험 시험일정·응시자격 등(안 제15조)

- 자격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매년 1회 이상 실시), 응시자격, 전문기관 지정·위탁(에너지관리공단), 검정수수료 등 규정

2)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안 제16조)

-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검정방법, 출제기준, 합격기준(각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면제 등 규정

3)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안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규정 신설
-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체계적 정보관리 추진

4) 기타(안 제18~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부칙(안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증 취득자('14.6.30, 이전 합격자)는 자격전환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신설
 - * 에너지평가사 1급·2급 모두 자격전환교육을 이수하면 단일화되는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 1차 필기시험에 既합격한 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산시빌테크날리지

나. 전화번호 : ①02-3436-9777

2. 명칭 : 압수커플러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분할형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일체화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커철근에 압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체결하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정성을 증진시켰다.

압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가 응력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증진시켜, 분할형 프리캐스트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범위>

암수 커플러와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용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1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국장을 보좌하는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 4부장을 신설하며 성폭력·학교폭력 등 전담경찰관 및 112신고·접수인력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사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에 성폭력대책과 및 범죄정보과를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 형사과를 신설하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본부의 경정 이하 공무원 4명 및 소속기관 경정 이하 공무원 805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사 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생활안전국에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형사기능의 가정폭력·실종 수사 업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안 제8조, 제9조, 제27조, 제40조의2)

나. 범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사국 산하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사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안 제9조)

- 다. 최종별 업무 성격에 최적화된 수사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와 형사과를 분리
(제34조, 제41조, 제42조)
- 라.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2차장을 보좌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제4부를 신설
(제34조)
- 마.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장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
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8, 별표9, 별표10)
- 바. 실무 인력의 현장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관리하고,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경
정 이하 ±809명(경정 +183명, 경감 +588명, 경위 △100명, 경장 △181명, 순경 △490명, 5급 +4명,
6급 +14명, 7급 +20명, 8급 △18명, 9급 △2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 사. 경남 진해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개편(안 별표3,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 종 별 : 보물
 -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
 - 지정내용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6-1
 - 구조,형식 : 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신라시대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 (경주시)
 - 지정면적 : 20.49㎡
3. 지정 사유 : 불임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단체	
					성명	주소	단체명	주소
1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6-1	임	10,126	20.49	국유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계			10,126	20.49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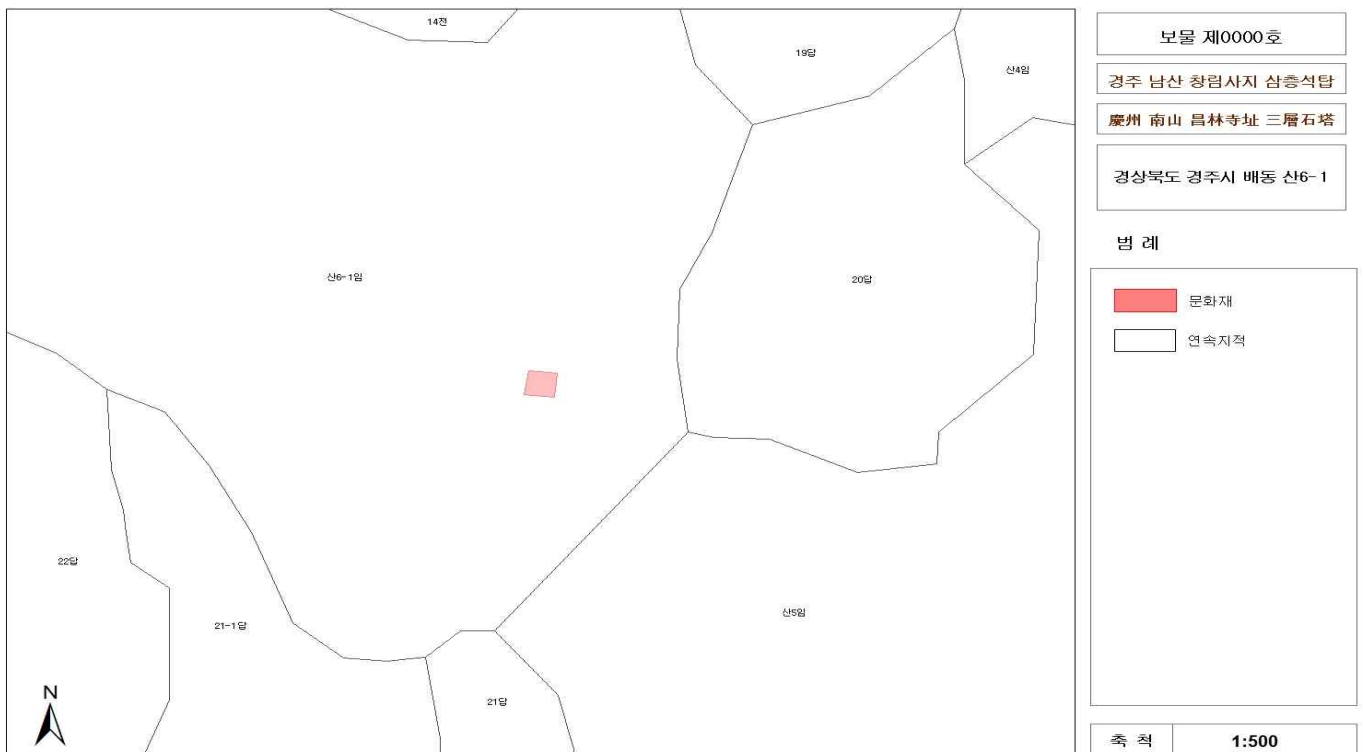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및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 경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53) 779-6110 / 팩스 (053) 760-7405
 - 주소 (우 701-701) 경북 경주시 양정로 206호(동천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창림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주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 가람에서 나타나는 층(공간)별 독립된 공간이 창림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확장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영역에 팔부신중을 조각한 석탑, 즉 삼층석탑이 조성 됐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탑의 조성시기는 사리공 속에서 발견된 '무구정탑원기'와 '무구정광대다라니'를 당시 이곳을 찾았던 추사 김정희가 모사하여 두었는데 그 속에 이 무구정탑의 조성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 문성왕(844년)때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록에 대하여서는 다소 이견들이 있다.

석탑은 2중기단을 조성한 후 3개층 탑신부를 얹은 전형적인 신라 3층석탑의 모습이다. 기단부의 구성은 상, 하 2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통돌에 하대면석과 지석으로 구분하여 치석하였고 면석에 각 돌마다 3개의 탕주를 두었다. 탕주의 개수는 석탑 변천의 가장 가치적인 지표로 통일신라 초기(600년대 말)로 석탑의 조성시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석재로 구성된 탑의 하층기단부의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8개의 석재로 조성된 황복사탑이나 장항리탑보다 고식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상부기단 면석에는 8부신중상을 양각하고 1구의 탕주를 두어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남면 1구, 서면 2구, 북면 1구만 남아있고 그 외 면석은 신재로 교체되어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창림사 탑 팔부신중 조각은 규모와 완성도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팔부신중상이 조각된 예는 안동 범홍사지 전탑, 화엄사 사사자탑, 인룡사지탑, 진전사탑 등과 인왕상이 조각된 장항리사지탑, 십이지신과 사천왕상이 조각된 원원사지탑 등과 조각수법을 비교해 볼 때도 기량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창림사지 삼층석탑은 1976년 복원을 거치며 2, 3층 탑신과 상층 팔부신중상 중 4매, 기단석재 일부가 신재로 교체되고 상륜부가 없어 탑의 원형이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나, 창림사지는 신라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지발굴을 통하여 석탑의 위치도 확인된 바 있고 경주 남산에 보존되고 있는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또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재를 중심으로 탑의 조성수법을 살펴보면 탑의 규모, 기단부의 구성과 상층기단부면석의 팔부신중상의 조각수법 등에서 신라석탑 조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증원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5-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름 : 유영종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49번길 40 은하수빌 305호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5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공포

○ 제8조(위원회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내용 개정

- 위원간 분쟁,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고의 · 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기타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부설 환경분석연구소
2. 대 표 자 : 김 신 도
3.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서울시립대내)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4호
6. 지정취소일 : 2015. 1. 15.
7. 전화번호 : 02-6490-54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호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조정하여 이천시 미급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이천공장)에 소요되는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32.5천m³/일
 -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L=35.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계		164,648	
송수시설	경기도 이천시 일원	145,893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18,755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일원
 - 일최대급수량 : 32.5천m³/일
7. 목표연도 : 2015년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4년 3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관리처(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 02-2150-044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69호(2014.2.)와 같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2. 12.(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불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14-10-0001665	(주)해광중기 대표이사	해광상봉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1-2014-10-0000027	은동진	101스마트캐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04-10-0000118	한진산업개발 (주)	101한진호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3-10-0000064	최승호	118영진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1-10-0000058	박덕신	108동남호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2-10-0000102	김창호	101금성호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2-10-0000101	김순분	103인성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06-10-0000044	김창호	103신양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9	81-1979-10-0000054	한진비닐공사 이정호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1984-10-0000088	채평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81-1990-10-0000028	대성천막사 유용상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99-10-0000031	김종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81-1992-10-0000117	대성바인다 최명식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92-10-0000096	양만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3가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81-2005-10-0000027	강원천막 강선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이상 위반)	허가취소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81-2008-10-0000041	대현천막 김진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이상 위반)	허가취소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81-1985-10-0000029	강창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이상 위반)	허가취소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42-2003-10-0000041	방진호	103신길 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이상 위반)	허가취소	전과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과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
김종신	42-2002-70-0000019	708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6개월	2015.2.12.
박승인	42-2002-30-0000053	722만풍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6개월	2015.2.12.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 500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5.2.12.
(주)서우	81-2006-70-0000003		전북 군산시 서수면	운용정지6개월	2015.2.12.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의산 501호	전북 익산시 선화로	운용정지6개월	2015.2.1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
우리천막종합상사	81-2003-70-0000003		광주 서구 풍암신흥안길	운용정지6개월	2015.2.12.
김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2-2004-70-0000157등 5국	자운김제등 5국	전북 김제시 요촌동	운용정지2개월	2015.2.12.

3. 처분근거 : 전과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과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 고
오수근	42-2006-70-0000045	716기룡호	전북 군산시 경암동	
노남일	42-2012-70-0000020	701제주레저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유)가나산업	44-2003-70-0000884	가나고창5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김성조	92-1999-70-0000115	DS4OYO	전북 고창군 고창읍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5. 01. 06.

6. 운용정지 기간 : 2015. 01. 06. ~ 2015. 02. 05.

7. 처분근거 : 전과법 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과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 고
김완근	94-2009-70-0000086	완근부안502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용례	42-1992-70-0000009	709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처분일자 : 2015. 01. 06.

6. 운용정지 기간 : 2015. 01. 06. ~ 2015. 03. 05.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4. 12. 29. ~ 2015. 1. 28.)

4. 처분일자 : 2014. 12. 29.(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상훈	42-1997-40-0000032	997용광호	제주시 애월읍 고내동길

※ 공고기간 : 2015. 1. 15. ~ 2015. 1. 28.

6. 참고사항

-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188호

2014년 9월 3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회 의 장 정 의 화 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 외교통일위원회 23인
- 13. 환경노동위원회 16인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정수는 24인에서 23인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수는 15인에서 16인으로 각각 조정함.

●국회규칙 제189호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회 의 장 정 의 화 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
2. 제1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합의로 지명하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4명
3.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명
- ③ 공동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 ④ 기구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이하 “연금개혁분과위”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이하 “제도개선분과위”라 한다)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이하 “검증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은 각각 10명으로 하고 검증분과위 위원은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검증분과위의 위원은 연금개혁분과위 또는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4명(국회의원 1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 ④ 검증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2명(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명 및 전문가 1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제5조(회의) ① 기구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

- ② 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안건 및 회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공청회 등)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기구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활동기간) 기구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 한다)가 구성된 날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제9조(개혁방안 제출) ①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 ② 기구가 제8조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기간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10조(실비 지급) 기구의 위원, 기구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둠(안 제2조).
- 나.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합의로 지명하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4명 및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다. 공동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하며, 기구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라.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마.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9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우정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 107 (신일동)
 대표사원 황만식
 검 사 장기석(기소), 김경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1. 21.자 2004고약3865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99바245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김봉욱이 업무에 관하여 2004. 11. 18. 13:06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05 도로범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우정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 107 (신일동)

대표사원 황만식

검 사 김용빈(기소), 김경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8. 8.자 2003고약1540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99바2466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송인상이 업무에 관하여 2003. 5. 27. 11:19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9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10 도로범위반

피 고 인 우경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6

대표자 사내이사 정기용

검 사 조영태(기소), 김경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담당변호사 이형오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5. 20.자 2000고약447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88아165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서왕석이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6. 04:4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깃점 3.5킬로미터 지점인 북대전 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69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일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383-4

대표자 사내이사 김광홍

검 사 황인규(기소), 김경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담당변호사 이형오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4. 26.자 2002고약656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93자866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이일영이 업무에 관하여 2002. 2. 28. 21:41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2 도로범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원통운 (변경전: 합자회사 대원운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85-2
대표이사 이기준
검 사 김혜경(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9. 12. 8.자 99고약1553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98사726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김영조가 업무에 관하여 1999. 7. 16. 13:24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3 도로범위반
피 고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 북구 효자로 107-1 (효문동)
대표이사 박남석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7아320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오세찬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1. 05:43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사무총장		성명	문상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790,000	0	0	79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건물 99.61㎡	190,000	0	0	190,000	전세보증금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건물 97.72㎡ 중 48.86㎡	300,000	0	0	300,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건물 97.72㎡ 중 48.86㎡	300,000	0	0	300,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980	0	0	13,98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저 배기량(2,700cc)	13,980	-	-	13,98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130,997	96,464	34,125	193,336	
본인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29,974(6,843 증가), 국민은행 0(636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1,956, 삼성화재해상보험 18,806(8,654 증가), 선우공제회 42,140(7,814 증가)	70,221	44,547	21,872	92,896	봉급저축 등
배우자		국민은행 12,795(2,627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9,588(969 증가), 우체국 1,481(240 증가), 농협중앙회 36,000(33,000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0(25 감소)	23,053	43,775	6,964	59,864	
장녀		국민은행 9,000(3,300 증가), 외환은행 10,600(1,525 증가), 우리은행 0(11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3,900(1,103 증가), 신한은행 4,213(5,037 감소)	26,833	6,031	5,151	27,713	
장남		신한은행 4,901(58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962(1,388 증가)	10,890	2,111	138	12,863	
▶ 유가증권(소계)			3,571	0	1,607	1,964	
배우자	상장주식	태광 35주, 주성엔지니어링 500주	3,571	0	1,607	1,964	주식가격 하락
▶ 채무(소계)			331,041	7,960	473	338,528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116,507, 공무원연금공단 32,021(7,487 증가)	141,041	7,960	473	148,528	학자금대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190,000	0	0	190,000	임대보증금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607,507	88,504	35,259	660,752	증감액 : 53,245천원 (가액변동: -1,607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8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흡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4. 사업기간 : 불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불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전화번호 : 3410-77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② 대 지 면 적 (㎡)		1,366.00	
③ 건 축 면 적 (㎡)		686.84	
④ 건 축 연면적 (㎡)		1,917.07	
⑤ 건 폐 율 (%)		50.28	
⑥ 용 적 률 (%)		140.34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동 48세대 (지상 1~4층)
	주택 형별	도시형 생활주택 (행복주택)	전용21㎡A형 : 31세대 전용21㎡S형 : 11세대 전용31㎡A형 : 06세대
		계	총 4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5.03.31 ~ 2015.11.30	
⑨ 부대 복리 시설	경 로 당	-	
	작은도서관	-	
	관리사무소	-	
	보육시설	-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현황	주민공동시설	101.30	
	MDF, 방재실, 택배보관실	31.24	
	경 비 실		
	어린이놀이터	-	
	기계,전기,발전기실	-	
	주 차 장	25대 (지상:25대)	
	근린생활시설	-	
⑩ 공동저수시설(TON)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9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 창 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4. 사업기간 : 불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불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전화번호 : 02-3410-770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② 대 지 면 적 (㎡)	9,187.60	
③ 건 축 면 적 (㎡)	1,880.96	
④ 건 축 연면적 (㎡)	23,331.27	
⑤ 건 폐 율 (%)	20.47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⑥ 용 적 륜 (%)			191.7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4동 298세대 (지하1층, 지상9~15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 29㎡A : 122세대,	전용 29㎡A-S : 12세대						
		계	전용 36㎡A : 96세대,	전용 36㎡A-S : 16세대						
			전용 45㎡A : 48세대,	전용 45㎡A-S : 4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5.03. ~ 2017.03.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주민공동시설 (멀티프로그램실)		51.61㎡							
	관리사무소		98.60㎡							
	방재실		24.24㎡							
	경로당		113.71㎡							
	어린이집		199.63㎡							
	어린이놀이터		115.00㎡							
	주민운동시설		585.00㎡							
	경비실		6.72㎡							
	근린생활시설		65.20㎡							
주차장		167대 (지상:42대, 지하:125대)								
⑩ 공동저수시설(TON)			240ton(비상저수시설)							
⑪ 단위세대 면적변경	행복 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29㎡A	122	29.44	18.56	48.00	2.96	14.60	65.56	
		29㎡A-S	12	29.44	18.56	48.00	2.96	14.60	65.56	
		36㎡A	96	36.83	23.22	60.05	3.70	18.26	82.01	
		36㎡A-S	16	36.83	23.22	60.05	3.70	18.26	82.01	
		45㎡A	48	45.74	28.84	74.58	4.60	22.68	101.85	
		45㎡A-S	4	45.74	28.84	74.58	4.60	22.68	101.85	

●경기도고시제20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5.01.26. ~ 2015.02.25.(영업정지 1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12-0103	주택건설 사업자	리더스주택건설(주) (나만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7, 1층	·등록사항변경신 고지연 (기술자)	영업정지1개월 (2015.01.26.~201 5.02.25.)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남양주시고시제2014-360호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2공구) 공원사업시행계획

1. 우리시 화도읍 묵현리 187-10번지 일원의 천마산군립공원 진입도로를 확장 개선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남양주고시 제 2014-86(2014.03.13.)호로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에 의한 분할 및 면적 변경에 따라
2. 공원과에서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명칭 :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2공구)(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남양주시장(공원과장)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번지(금곡동 185-10번지)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87-10번지 일원(천마산군립공원)
- 용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관계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화도읍 묵현리	187-13	전	2,477	233		이상욱	화도읍 묵현리 212				
	변경		187-20	전	232	232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	기정	"	산105	임	9,364	2,780		이해권외 1인	화도읍 묵현리 9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관계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경		187-15	임	2,786	2,786	1/2	이인용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7길 22-8				
							1/2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3	기정	"	184	전	1,965	95		이성구	화도읍 묵현리 183				
	변경		184-4	전	97	97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	기정	"	188	답	704	307		이상옥	화도읍 묵현리 212				
	변경		188-2	답	331	331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188-3	답	315	315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5	기정	"	189	전	955	81		노영식	화도읍 묵현리 120				
	변경		189-1	전	80	80	1	노준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16,103동 1204호(방학동,대상타운현대아파트)				
6	기정	"	산106	임	8,900	58		이영훈외 4인	화도읍 가곡리 279				
	변경		184-3	임	32	32	1/6	이정훈	화도읍 비룡로 372				
		1/6					이정구	구리시 원수택로 32번길 11-15 수택동					
		4/6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7	기정	"	산107	임	9,818	150		박종모외 1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14-5				
	변경		188-1	임	147	147	1/2	박종모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45길 41				
		1/2					신청강씨 안주파 종친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5					
8	기정	"	184-1	전	775	252	1	국	남양주시				
9	기정	"	산150-1	임	290	195	1	국	"				
10	기정	"	187-10	전	467	276	1	국	"				
11	기정	"	187-12	전	6	6	1	국	"				
12	기정	"	198-1	구	6,367	154	1	국	건교부				
13	기정	"	193	대	823	157	1	국	남양주시				
14	기정	"	산105-3	임	20	20	1	국	"				
	기정	총 14필지			42,931	4764							
	변경				42,931	5,000							

○ 지장물 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화도읍 묵현리	187-17										
	변경	"	187-17	분묘	유연단장	1	기	이해권	서울시 서초구 청룡마을 4길 24-3				
2	기정	"	187-15										
	변경	"	187-15	분묘	유연단장	1	기	이해권	서울시 서초구 청룡마을 4길 24-3				
3	기정	"	189외										
	변경	"	189외	웬스 (출입문 포함)	철망 H=1.2m L=15m	1	식	노준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16,103동 1204호(방학동,대상타운현대아파트)				
				관정 (양수기 포함)		1	식						
			수목	은행나무 R=20	1	wn							

○ 사업규모 :

- 진입도로 확장 : L=250.0m, B=9.0m
- 진입교량 확장 : L=11.0m, B=10.0m 등

라. 사업시행기간 : 2014. 3. ~ 2015. 12. 31(22개월)

마. 공원사업시행 근거

-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2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남양주시청 공원과 및 천마산관리사무소에 도면 비치

사.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공원과 및 천마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간 공람 합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5-5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한진환경컨설팅
2. 대 표 자 : 한덕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7동 203호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7호
 6. 등 록 일 : 2015. 1. 15.

●경기도공고제2015-7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한국환경연구소 (안교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호계동)	수질	경기도 제73호	2015.01.15.

●경기도공고제2015-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 내 용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비 고
(주)한국환경연구소 (안교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호계동)	수질환경 (경기도제99호)	2015. 1. 15.	

●전라남도공고제2015-5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 환경기술산업	정성태 조호준	전남 광양시 옥곡면 가장골길 19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11호)	2015.1.15

상**훈**‘2014년도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획재정부	박준섭	홍조 근정훈장
	기획재정부	이호승	근정포장
			2014. 12. 31.

‘201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획재정부	최대용	홍조 근정훈장
	기획재정부	조원봉	녹조 근정훈장
	기획재정부	권종우	옥조 근정훈장
	기획재정부	신형철	근정포장
	기획재정부	황문연	근정포장
			2014. 12. 31.

‘2014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 특별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송대호	근정포장
			2014.12.31.

‘201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박명수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손재욱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주성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윤형섭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안성익	홍조근정훈장
	국회도서관	박금순	홍조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강한배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난희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한동연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승희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홍순영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홍성진	녹조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근홍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송윤주	옥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재우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박재정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이원탁	근정포장
			2014.12.31.

‘201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류환민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춘순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전상수	근정포장
국회 황진하의원실	김교범	근정포장
국회 이상민의원실	박창수	근정포장

2014.12.3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4형제 8359	2014압제 289	정인기	사기 등	불상	15~17	압수현금 394만원	1
2014형제 49090	2014압제 19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불상	1	가위	1
2015형제 678	2015압제 11	김동현	절도	불상	11	팬티	1
					12	브래지어	1
					13	양말	2
					14	레깅스	1
					15	팬티	8
					16	팬티스타킹	1
					17	나시티	2

-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033-371-4575)에 환부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2015년 1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4-4071	2014-251	김경배	절도, 절도미수	성명불상	5	MONTPIC 파란색 점퍼	1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	"	"	"	"	8	갈색 크로스백	1개
"	"	"	"	"	11	후레쉬	2개
"	"	"	"	"	13	차량용 재떨이	3개
"	"	"	"	"	14	로렉스 남성용 시계	1개
"	"	"	"	"	16	진주반지	1개
"	"	"	"	"	19	에세 담배	5갑
"	"	"	"	"	20	더원 담배	3갑
"	"	"	"	"	21	래종 블루 담배	4갑
"	"	"	"	"	23	10원 동전	35개
"	"	"	"	"	24	50원 동전	1개
"	"	"	"	"	26	외국동전	5개
2014-4071	2014-251	김경배	절도, 절도미수	성명불상	28	50원 동전	12개
"	"	"	"	"	36	1달러 지폐	4매
"	"	"	"	"	37	중국 화폐 2위안	1매
"	"	"	"	"	38	20바트 외국 지폐	1매
"	"	"	"	"	39	50바트 외국 지폐	1매
"	"	"	"	"	40	백원권 구지폐	1매
"	"	"	"	"	42	비아그라	4알
"	"	"	"	"	43	씨알레스	6알
"	"	"	"	"	44	손톱손질 세트	1개
2014-4594	2014-288	최종태	공문서부정행사 등	강성일	1	주민등록증(강성일)	1개
2014-4718	2014-297	이수남	주민등록법위반 등	허 기	1	주민등록증(허 기)	1개
2014-4719	2014-298	강원배	공문서부정행사	강원배	1	자동차운전면허증(강언주)	1개
2014-4720	2014-299	이성진	공문서부정행사 등	최수영	1	주민등록증(최수영)	1개
2014-2519	2014-173	문형민 외3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성명불상	1	방법창	1개
2014-2622	2014-179	이장규	공문서부정행사	류재원	1	류재원 명의 운전면허증	1
2014-3178	2014-207	정막동	주민등록법위반 등	이영봉	1	이영봉 명의 주민등록증	1
2014-3212	2014-210	서은영	공문서부정행사	강미선	1	강미선 명의 운전면허증 (800310-2*****)	1
2014-4164	2014-259	김진호	공문서부정행사 등	박병주	1	박병주 명의 주민등록증 (770318-1*****)	1
2014-3969	2014-245	김준영	공문서부정행사 등	정창득	1	정창득 명의 주민등록증 (670323-1*****)	1
2014-4165	2014-260	손금순	공문서부정행사 등	박순옥	1	박순옥 명의 주민등록증	1
2014-4437	2014-268	신용준	공문서부정행사 등	김종민	1	김종민 명의 주민등록증	1
2014-4470	2014-277	우창호	공문서부정행사 등	변태경	1	변태경 명의 주민등록증	1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4형제 8398	2014압제 231	고재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성명불상	1	삼성 SENS Q310(검정색, S/N:에4193CQ900358A)	1대
2014형제 20657	2014압제 621	이동기	절도	성명불상	1	아이폰 흰색	1대
2014형제 25670	2014압제 816	박대월 외1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비버오토바이키 등	1대
					2	포르테오토바이키	1대
					3	대림포르테	1대
2014형제 18507	2014형제 539	김두영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성명불상	1	오백원 동전 1개	800원
					2	일백원 동전 3개	
2014형제 20019	2014압제 597	정희중	절도 등	성명불상	1	농협 OK체크카드	1매
					2	농협체크카드	1매
2011형제 26753	2011압제 929	김범규 외4명	특수절도 등	김범규	1	주방용 가위	1개
2014형제 28154	2014압제 892	최용대	절도	성명불상	1	흰색스마트(테크노)	1대
2014형제 23091	2014압제 726	안영웅 외3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대림오토바이125cc	1대
2014형제 24468	2014압제 775	김줄복 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밥솥	1대
					2	냉장고 뒤 모터	4대
2014형제 25363	2014압제 806	전진안 외3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맛데리	1개
					2	나이키가방	1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19 형사보상

피 고 인 1. 망 임덕택 (380220-*****, 2013. 12. 27. 사망)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8

2. 망 윤성일 (410209-*****, 1987. 11. 2. 사망)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5

청 구 인) 피고인 망 임덕택의 상속인

1) 피고인 망 임대택의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 김순엽, 임봉순, 임동일, 임동성, 임동숙, 임동주 및 피고인 박남석은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 1. 권섭녀 (460219-*****)
- 2. 임동기 (720718-*****)
- 3. 임동원 (751221-*****)
- 4. 임동인 (780828-*****)

청구인 1 내지 4의 주거 군산시 옥도면 명사십리1길 63

피고인 망 윤성일의 상속인

- 5. 이근림 (510629-*****)
- 6. 윤희라 (750226-*****)

주거 군산시 해망로 447, 105동 607호 (소룡동, 성원쌍떼빌아파트)

- 7. 윤희웅 (780124-*****)

주거 군산시 원산북2길 35, 101동 1411호 (산북동, 산북1차대명아파트)

- 8. 윤희용 (801210-*****)

청구인 5, 8의 주거 군산시 공단대로 54, 102동 1401호 (조촌동, 타워써미트)

대 리 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 석진옥, 나상건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1재노32, 2014재노2(병합) 판결

주 문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권섭녀에게 83,360,000원, 청구인 임동기, 임동원, 임동인에게 각 55,573,333원, 청구인 이근림, 윤희웅에게 각 49,140,720원, 청구인 윤희라, 윤희용에게 각 32,760,48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망 임덕택

1) 피고인은 1968. 4. 9. 및 1968.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1968. 10. 10. 제3회 공판기일에 수산업법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되었다.

2) 위 법원은 1968. 11.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 및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수산업법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8. 11. 7. 선고 68고 538, 805, 1058, 1658(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 망 윤성일

1) 피고인은 1968.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 1968. 9. 19. 제3회 공판기일에 수산업법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되었다.

2) 위 법원은 1968. 11.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탈출, 잠입 및 반국가단체가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수산업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8. 11. 7. 선고 68고1430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다. 광주고등법원은 위 가, 나항 기재 각 1심 판결을 병합한 다음

1) 피고인 망 임덕택에 대한 1심판결 유죄부분 중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무죄 부분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임덕택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국가보안법위반, 탈출 및 잠입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 피고인 망 윤성일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 중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탈출, 잠입 및 반국가단체가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무죄 부분 중 수산업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윤성일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잠입 및 반국가단체가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1969. 3. 13. 선고 68노293, 303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1969. 6. 2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 임덕택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윤성일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확정되었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588 판결).

바. 피고인 망 임덕택의 아들인 청구인 임동기와 피고인 망 윤성일의 처인 청구인 이근림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4. 5. 15.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고[광주고등법원 2011재노32, 2014재노2(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들은 1967. 5. 24.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1967. 9. 24. 송환되어 인천항에 도착하여 합동신문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군산항에 도착한 날인 1967. 9. 28.부터 1967. 11. 3.까지(37일) 구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 망 임덕택은 1968. 5. 27. 다시 구금되어 위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71.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망 윤성일은 1968. 6. 19. 다시 구금되어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70.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아. 피고인 망 임덕택은 2013. 12. 27., 피고인 망 윤성일은 1987. 11. 2. 각 사망했는데, 청구인 권섭녀, 임동기, 임동원, 임동인은 피고인 망 임덕택의 재산상속인들이고, 청구인 이근림, 윤혜라, 윤해웅, 윤해용은 피고인 망 윤성일의 재산상속인들이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망 임덕택은 1967. 9. 28.부터 1967. 11. 3.까지 37일, 1968. 5. 27.부터 1971. 8. 2.까지 1,163일 모두 합쳐 1,200일 동안 구금되었고, 피고인 망 윤성일은 1967. 9. 28.부터 1967. 11. 3.까지 37일, 1968. 6. 19.부터 1970. 7. 7.까지 749일 모두 합쳐 786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4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1,680

원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형사보상금의 하한은 1일 41,680원, 상한은 1일 208,400원(= 41,680원 × 5)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208,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망 임덕택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50,080,000원(= 1,200일 × 208,400원)이고, 피고인 망 윤성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63,802,400원(= 786일 × 208,400원)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 권섭녀에 대하여는 83,360,000원(= 250,080,000원 × 3/9), 청구인 임동기, 임동원, 임동인에 대하여는 각 55,573,333원(= 250,08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청구인 이근림, 윤해웅(호주상속)에 대하여는 각 49,140,720원(= 163,802,400원 × 3/10), 청구인 윤혜라, 윤해웅에 대하여는 각 32,760,480원(= 163,802,400원 × 2/10)이다.

3. 결론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권섭녀에게 83,360,000원, 청구인 임동기, 임동원, 임동인에게 각 55,573,333원, 청구인 이근림, 윤해웅에게 각 49,140,720원, 청구인 윤혜라, 윤해웅에게 각 32,760,4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24.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김성흠
	판사	장찬수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296 형사보상
(2012고정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청 구 인 이정민 (881103-*****), 학생
주거 대전 유성구 배울1로 147, 205동 102호(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푸르지오하임2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삼성동 280-15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고정144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93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고정1444호 판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노179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1.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검사는 대법원 2013도159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상고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에서 2012. 9. 14., 2012. 11. 21., 2013. 5. 8., 2013. 6. 14., 2013. 7. 17. 총 5회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10. 17., 2013. 11. 28. 총 2회 출석하였다.

2.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가. 형사비용보상 여부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①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며,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 ③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가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그런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비용보상을 할 당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는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일당

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40,000원, 2013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50,000원이다.

나) 합계: 330,000원[= 4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 증인의 일당) × 2회(2012년도 출석 횟수) +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증인의 일당) × 5회(2013년도 출석 횟수)]

3)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사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제1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1,000,000원으로 증액하고, 항소심, 상고심에 대한 변호인의 보수는 각 300,000원으로 합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로 합계 1,6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8.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2 형사보상
(2013노1312 사기)

청 구 인 양근석 (721119-*****) , 택배기사
주 거 대전 서구 갈마중로 42번길 45, 101호(갈마동, 동광시티빌라)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선화동 202-9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131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9,1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86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5.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3노131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2. 27.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대법원 2014도904호 사건에서 2014. 8. 20.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2013. 5. 24. 법정구속된 후 2013. 7. 23.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3. 5. 24.부터 2013. 7. 23.까지 합계 61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구급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4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1,68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1,680원, 상한은 1일 208,400원(= 41,68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급의 종류 및 기간, 구급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급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9,150,000원(= 150,000원×61일)이다.

2) 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급 등으로 인해 12,0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구하고 있으나, 구급으로 인한 형사보상에 있어서 법정 보상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정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급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인 고통과 손상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급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7.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5 형사보상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62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84,04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 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5621	대전지방법원	1995. 2. 27.	500,000원	1995. 8. 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621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무죄	2013. 4. 2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8. 9.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9 + 132/365) × 5%	984,041원

3. 보상결정액

984,041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7 형사보상

(2013고단153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153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90,34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 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4654	대전지방법원	1995. 2. 23.	500,000원	1995. 5. 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1538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무죄	2013. 6. 2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5. 9.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9 + 224/365) × 5%	990,342원

3. 보상결정액

990,342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9 형사보상

(2014고단5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4고단5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95,79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8고약7446	대전지방법원	2008. 4. 29.	300,000원	2008. 7. 31.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53	대전지방법원	2014. 1. 29.	무죄	2014. 2. 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8. 7. 31.	2014. 12. 19.	300,000원 + 300,000원 × (6 + 141/365) × 5%	395,794원

3. 보상결정액

395,79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1 형사보상

(2014고단667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고단66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88,05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6고약9654	대전지방법원	2006. 5. 25.	700,000원	2006. 9.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667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무죄	2014. 5. 2.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700,000원	2006. 9. 26.	2014. 12. 19.	700,000원 + 700,000원 × (8 + 84/365) × 5%	988,054원

3. 보상결정액 988,05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3 형사보상
(2014고단105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고단105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95,79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8고약8658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300,000원	2008. 7. 31.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1052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무죄	2014. 5. 2.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8. 7. 31.	2014. 12. 19.	300,000원 + 300,000원 × (6 + 141/365) × 5%	395,794원

3. 보상결정액

395,79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5 형사보상
 (2013고단294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양운수 주식회사 (181211-*****)
 소재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화창6길 16
 대표자 사내이사 신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294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57,67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3184	대전지방법원	2000. 5. 9.	500,000원	2000. 8. 2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2944	대전지방법원	2013. 9. 26.	무죄	2013. 10. 5.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0. 8. 29.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4 + 112/365) × 5%	857,671원

3. 보상결정액

857,671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9 형사보상
(2013고단321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성화물 (200111-*****)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각화동)
송달장소 광주 북구 오치동 989-13
대표이사 박동호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321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92,46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 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9089	대전지방법원	1994. 9. 10.	500,000원	1995. 4. 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3215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무죄	2013. 10. 3.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4. 8.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9 + 255/365) × 5%	992,465원

3. 보상결정액 992,465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1 형사보상
(2014고단259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형상사 (160114-*****)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75(와동)
 대표이사 김기송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259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1,75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6고약902	대전지방법원	2006. 2. 9.	300,000원	2006. 3. 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2596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무죄	2014. 9. 25.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6. 3. 8.	2014. 12. 19.	300,000원 + 300,000원 × (8 + 286/365) × 5%	431,753원

3. 보상결정액 431,753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3 형사보상
 [2012노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 구 인 도병익 (540325-*****) , 운전자
 주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566번길 15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 25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노20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5,8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2012. 9. 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2노2030 사건에서 2013. 5. 1.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한 대법원 2013도5961 사건에서 2014. 6. 2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1. 7. 27.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구인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고, 2011. 11. 30.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주교도소에 구인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제1심에서 2012. 9. 7. 구속되었다가 2013. 5. 1. 무죄 선고로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39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3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38,880원 × 5)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5,850,000원(= 239일 × 1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5,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8.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4 형사보상
[2012노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 구 인 도병익 (540325-*****), 운전사
 주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566번길 15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 25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노20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371,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2012. 9. 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2노2030 사건에서 2013. 5. 1.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한 대법원 2013도5961 사건에서 2014. 6. 2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2012. 1. 31., 2012. 2. 10., 2012. 3. 27., 2012. 5. 8., 2012. 6. 22., 2012. 7. 20., 2012. 9. 7. 총 7회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권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 여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일당, 여비,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 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40,000 원이다.

또한 위 법률 제4조는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3조 제2항은 국내 여비를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면서,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는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매건 300,000원이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일당

○ 280,000원[= 40,000원(2012년 증인 일당) × 7회(제1심)]

나) 여비(운임)

○ 91,000원[= 13,000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수원시 기준 여비) × 7회(제1심)]

다) 변호인 보수

○ 3,000,000원[= 300,000원 × 2(제1심 및 제2심) × 5(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 참작)]

라) 합계 3,371,000원(= 일당 280,000원 + 여비 91,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37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8.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1 형사보상
(2012고단22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164411-*****)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1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 하마나빌딩3층

대표이사 정청욱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김경울, 박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고단22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20,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5고약30864	대전지방법원	2005. 12. 15.	500,000원	2006. 2. 2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2217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무죄	2012. 8. 24.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6. 2. 20.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8 + 302/365) × 5%	720,684원

3. 보상결정액

720,68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3 형사보상
 (2012고단221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164411-*****)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1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 하바나빌딩 3층
 대표이사 정청옥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고단221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95,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22525	대전지방법원	2002. 11. 29.	500,000원	2003. 2. 21.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2219	대전지방법원	2012. 7. 25.	무죄	2012. 8. 2.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3. 2. 21.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1 + 301/365) × 5%	795,616원

3. 보상결정액

795,616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5 형사보상

(2011고단528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164411-*****)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1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 하바나빌딩3층

대표이사 정청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9. 선고 2011고단528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37,05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5고약4988	대전지방법원	2005. 3. 21.	700,000원	2005. 5. 3.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1고단5287	대전지방법원	2012. 1. 9.	무죄	2012. 1. 1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700,000원	2005. 5. 3.	2014. 12. 19.	700,000원 + 700,000원 × (9 + 230/365) × 5%	1,037,054원

3. 보상결정액

1,037,05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7 형사보상
{2013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청 구 인 김도영 (731109-*****), 공무원
 주거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4, 109동
 1104호(아산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등록기준지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63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합10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11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합108 판결 : 무죄

나. 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583 판결 : 항소기각, 2014. 4. 19. 확정

2. 형사비용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비용보상금의 결정

1) 일당(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500,000원(=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증인의 일당) × 10회(= 제1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횟수 7회 + 제2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횟수 3회))

2) 여비(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청구인의 주거지였던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4, 109동 1104호(아산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기준여비 : 11,000원

- 총 출석횟수 : 10회
- 소계 : 110,000원(= 11,000원 × 10회)

3) 변호인의 보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1,500,000원(청구인은 제1심에서만 사선변호인 선임, 2014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300,000원이나,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 재판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

4) 합계

○ 2,110,000원{= 500,000원(일당) + 110,000원(여비) + 1,500,000원(변호인의 보수)}

3. 보상결정액 : 형사비용보상금 2,110,000원

2014. 12. 5.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6 형사보상
(2013노1540 업무방해)

청 구 인 박현근 (650410-*****), 자영업
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386번길 7-9 (구서동)
등록기준지 밀양시 삼문동 18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정17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18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정1799 판결 : 무죄.

나. 대전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노1540 판결 : 항소 기각, 2014. 5. 23. 확정

2. 형사비용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비용보상금의 결정

1) 일당(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560,000원 [= {4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 증인의 일당) × 4회(= 제1심 공판기일 출석횟수 4회)} +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증인의 일당) × 8회(= 제1심 공판기일, 제2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횟수 8회)}]

2) 여비(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청구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장전동 200, 부산 금정구 금샘로386번길 7-9 (구서동)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기준여비 : 52,000원

○ 총 출석횟수 : 12회(= 제1심 7회 + 제2심 5회)

○ 소계 : 624,000원(= 52,000원 × 12회)

3) 변호인의 보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3,000,000원[= 1,50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300,000원이나,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 재판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로 증액) × 2심급]

4) 합계

○ 4,184,000원{= 560,000원(일당) + 624,000원(여비) + 3,000,000원(변호인의 보수)}

3. 보상결정액 : 형사비용보상금 4,184,000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7 형사보상

{2013노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 구 인 오천석 (680307-*****), 회사원

주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53-24 저리 삼일원앙아파트 102-202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396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노24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82,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정328 판결 : 벌금 300만 원

나. 대전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노2489 판결 : 무죄, 2014. 5. 23. 확정

2. 형사비용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비용보상금의 결정

1) 일당(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350,000원 [=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증인의 일당) × 7회(= 제1심 공판기일, 제2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횟수 7회)]

2) 여비(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청구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53-24 저리 삼일원앙아파트 102-202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제1심)까지의 왕복 교통요금 : 2,200원(= 일반버스요금 1,100원 × 2회)

○ 청구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53-24 저리 삼일원앙아파트 102-202에서 대전지방법원(제2심)까지의 기준여비 : 8,000원

○ 총 출석횟수 : 제1심 4회, 제2심 3회

○ 소계 : 32,800원[= 8,800원(2,200원 × 4회) + 24,000원(8,000원 × 3회)]

3) 변호인의 보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3,000,000원[= 1,50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300,000원이나,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 재판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로 증액) × 2심급]

4) 합계

○ 3,382,800원{= 350,000원(일당) + 32,800원(여비) + 3,000,000원(변호인의 보수)}

3. 보상결정액 : 형사비용보상금 3,382,800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6 형사보상
(2013고단153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고단15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90,34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 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2938	대전지방법원	1995. 1. 10.	500,000원	1995. 5. 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1537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무죄	2013. 6. 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5. 9.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9 + 224/365) × 5%	990,342원

3. 보상결정액 990,342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18 형사보상

(2014고단52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4고단5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04,17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6고약10712	대전지방법원	2006. 6. 9.	500,000원	2006. 10. 1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52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무죄	2014. 1. 30.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6. 10. 19.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8 + 61/365) × 5%	704,178원

3. 보상결정액 704,178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0 형사보상

(2014고단6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66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63,90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8고약502	대전지방법원	2008. 2. 5.	500,000원	2008. 5. 3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666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무죄	2014. 7. 24.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8. 5. 30.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6 + 203/365) × 5%	663,904원

3. 보상결정액

663,904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2 형사보상

(2014고단10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오종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4고단105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11,43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11715	대전지방법원	2000. 9. 14	300,000원	2000. 11. 1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1051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무죄	2014. 5.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0. 11. 14.	2014. 12. 19.	300,000원 + 300,000원 × (14 + 35/365) × 5%	511,438원

3. 보상결정액

511,438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4 형사보상
(2014고단259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새한고속화물 (160114-*****)
소재지 대전 중구 대종로358, 2층 (부사동)
대표이사 어태공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단25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09,4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14725	대전지방법원	2002. 8. 27.	500,000원	2002. 8. 3.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2594	대전지방법원	2014. 8. 26.	무죄	2014. 9. 3.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2. 8. 3.	2014. 12.19.	500,000원 + 500,000원 × (12 + 138/365) × 5%	809,452원

3. 보상결정액 809,452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28 형사보상
(2014고단172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서울가람물류 주식회사 (134111-*****)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237번길 35 (신갈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1303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대표이사 이연익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고단17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14,86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4고약31945	대전지방법원	2004. 11. 30.	500,000원	2004. 12. 21.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1720	대전지방법원	2014. 6. 24.	무죄	2014. 7. 2.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4. 12. 21.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9 +363/365) × 5%	749,863원

나. 무죄판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변호인의 보수(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	165,000원
---	----------

3. 보상결정액 914,863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5 형사보상
 (2014고단260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화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162번길 90(대사동)
 송달장소 서울 중구 정동길 5, 3층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법무법인 여는
 대표사원 김용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무 죄 관 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260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08,76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 8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3925	대전지방법원	1994. 5. 23.	500,000원	1994. 8. 13.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4고단2600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무죄	2014. 9. 25.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4. 8. 13.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20 +128/365) × 5%	1,008,767원

3. 보상결정액 1,008,767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8 형사보상
 (2014고단17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글로벌로지스틱스(변경전: 영진운수) (160113-*****)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 (와동)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7,69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9752	대전지방법원	2000. 8. 25.	300,000원	2001. 2. 13.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1고단5289	대전지방법원	2012. 1. 11.	무죄	2012. 1. 19.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1. 2. 13.	2014. 12. 19.	300,000원 + 300,000원 × (13 + 309/365) × 5%	507,698

나. 비용에 대한 보상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본 건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14. 11. 11. 접수,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은 그 기간이 도래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3. 보상결정액

507,698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2 형사보상
(2012고단221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164411-*****)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1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 하바나빌딩 3층

대표이사 정청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고단22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501,7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4고약24278	대전지방법원	2004. 9. 10.	1,000,000원	2004. 12. 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2218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무죄	2012. 9. 6.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1,000,000원	2004. 12. 6.	2014. 12. 19.	1,000,000원 + 1,000,000원 × (10 + 13/365) × 5%	1,501,780

나. 비용에 대한 보상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본 건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14. 11. 11. 접수,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은 그 기간이 도래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3. 보상결정액

1,501,780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4 형사보상

(2011고단52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164411-*****)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1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2 하바나빌딩 3층

대표이사 정청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52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3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18756	대전지방법원	2000. 11. 17.	500,000원	2001. 7.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1고단5290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무죄	2012. 1. 21.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1. 7. 26.	2014. 12. 19.	500,000원 + 500,000원 × (13 + 146/365) × 5%	835,000

나. 비용에 대한 보상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본 건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14. 11. 11. 접수,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은 그 기간이 도래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3. 보상결정액

835,000원

2014. 12. 19.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7 형사보상

(2013고단4363 강제추행 등)

청 구 인 김기문 (620626-*****), 회사원

주거 대전 동구 태전로 137번길 27, 403호(삼성동)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149-5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436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5,65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363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4. 30.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2014노130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2013. 11. 11. 구속된 후 2014. 4. 30.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세계로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171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구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4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1,68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1,680원, 상한은 1일 208,400원(= 41,68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5,650,000원(= 150,000원×171일)이다.

나) 청구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여 발생한 30,000,000원의 손해를 비롯하여 구금기간 동안의 급여,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도 구하고 있으나, 구금으로 인한 형사보상에 있어서 법정 보상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정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인 고통과 손상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위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 2014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 당 각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1심에 대한 변호인의 보수를 그 상한인 1,500,000원(= 300,000원 × 5)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변호인이었던 자의 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 나머지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금액 외에 녹취록 작성, 검찰 조사 등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5,65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23.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48 형사보상
(2013고정802 근로기준법위반)

청 구 인 황상모 (630111-*****),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 소장
주 거 대 전 유성구 관들4길 58(관평동)
등록기준지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207-10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정80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6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3482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2013. 5. 7.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2013고정802호)을 청구하여 2013. 10. 2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2013노279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5.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4회(선고기일 불출석), 항소심에서 2회 총 6회 출석하였으며, 청구인은 제1, 2심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내일을 선임하였다.

2.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가.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항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 2014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각 50,00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법원에 총 6회 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이었던 자의 비용은 300,000원(= 일당 50,000원 × 6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는 각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제1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1,000,000원으로 증액하고,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합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로 함께 1,3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23.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32 형사보상
(2014고정802 상해)

청 구 인 김선주 (701210-*****), 무직
주 거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184-67(사정동)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5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정80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56,6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정802호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4. 6. 13., 2014. 6. 27., 2014. 8. 27. 총 3회 출석하였고, 선고기일인 2014. 9. 17.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가.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왕복 교통요금 : 6,600원(= 시내버스 왕복요금 2,200원 × 3회)

3)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50,000원이다.

- 150,000원(= 50,000원 × 3회)

4) 합계: 156,600원(= 6,600원 + 150,000원)

5) 나머지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금액 외에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인 사무실 방문, 법원 방문, 선고기일 출석에 사용된 여비 또는 일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5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8.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16 형사보상
 청구인 전경숙 (570109-*****), 보석가게 운영
 주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3길 49-9(상수동)
 등록기준지 충주시 충인동 2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고합205, 257(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094,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4. 2. 13.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2고합205, 257(병합) 판결] 위 무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재판에 2012. 8. 27., 2012. 10. 15., 2012. 11. 8., 2012. 11. 29., 2013. 3. 18., 2013. 4. 15., 2013. 5. 13., 2013. 5. 30., 2013. 6. 27., 2013. 8. 26., 2013. 10. 21., 2013. 12. 16., 2014. 1. 20., 2014. 2. 13. 등 합계 14회 출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구자현과 법무법인(유한) 푸르메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구자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에서 사임한 2012. 11. 15.까지, 법무법인(유한) 푸르메는 2012. 11. 29.부터 변호인에서 사임한 2013. 6. 12.까지 각 청구인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였고, 2013. 6. 14.부터는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은 2012년에는 1일 40,000원, 2013년과 2014년에는 1일 5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당은 합계 660,000원[= (일당 40,000원 × 2012년 출석일 4일) + (일당 50,000원 × 2013년 및 2014년 출석일 총 10일)]이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2항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국내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는 ”제2호 대상자의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하고, 운임은 실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재판 당시 청구인의 주거가 서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로 함께 2,934,400원[= {서울-제주 왕복항공운임 189,600 + 식비 20,000원} × 14일]을 보상함이 상당하다.

4)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2년 및 2013년의 경우 건당 각 300,000원이다.

살피건대,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들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들에 대한 보수는 2,500,000원(= 1,000,000원 +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변호인의 여비 등

청구인은 변호인들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등의 지급도 구하나, 형사비용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이었던 자가 스스로 지출하였거나 제3자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성질상 확정된 무죄판결의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변호인들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비용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국선변호인의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여비, 일당을 변호인의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호인들의 여비 등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094,400원(= 일당 660,000원 + 여비 2,934,400원 + 변호인 보수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7.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판사	고소영